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2012계약심사사례집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목 차 】

I 계약심사제도 현황	3
1. 계약심사제도 개요	5
2. 계약심사 주요성과	7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9
1. 토목공사 분야	11
2. 건축공사 분야	55
3. 전기공사 분야	69
4. 기술용역 분야	81
5. 일반·학술용역 분야	93
6. 물품구매·제조 분야	99
7. 인쇄물 분야	109
III 전국 계약심사 사례	113
IV 부 록	137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139
2.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183
3.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219
4.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	235

I . 계약심사제도 현황

순 서

1. 계약심사제도 개요
2. 계약심사 주요성과

계약심사 현황

1. 계약심사개요

가. 계약심사제 개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원가심사 부서에서 거래실례가격조사, 현지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원가를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발주부서의 설계능력을 향상하는 제도

※ 특히, 계약심사 결과는 계약부서의 예정가격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

나. 계약심사제 운영 근거

- 1)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
-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 3) 행정안전부 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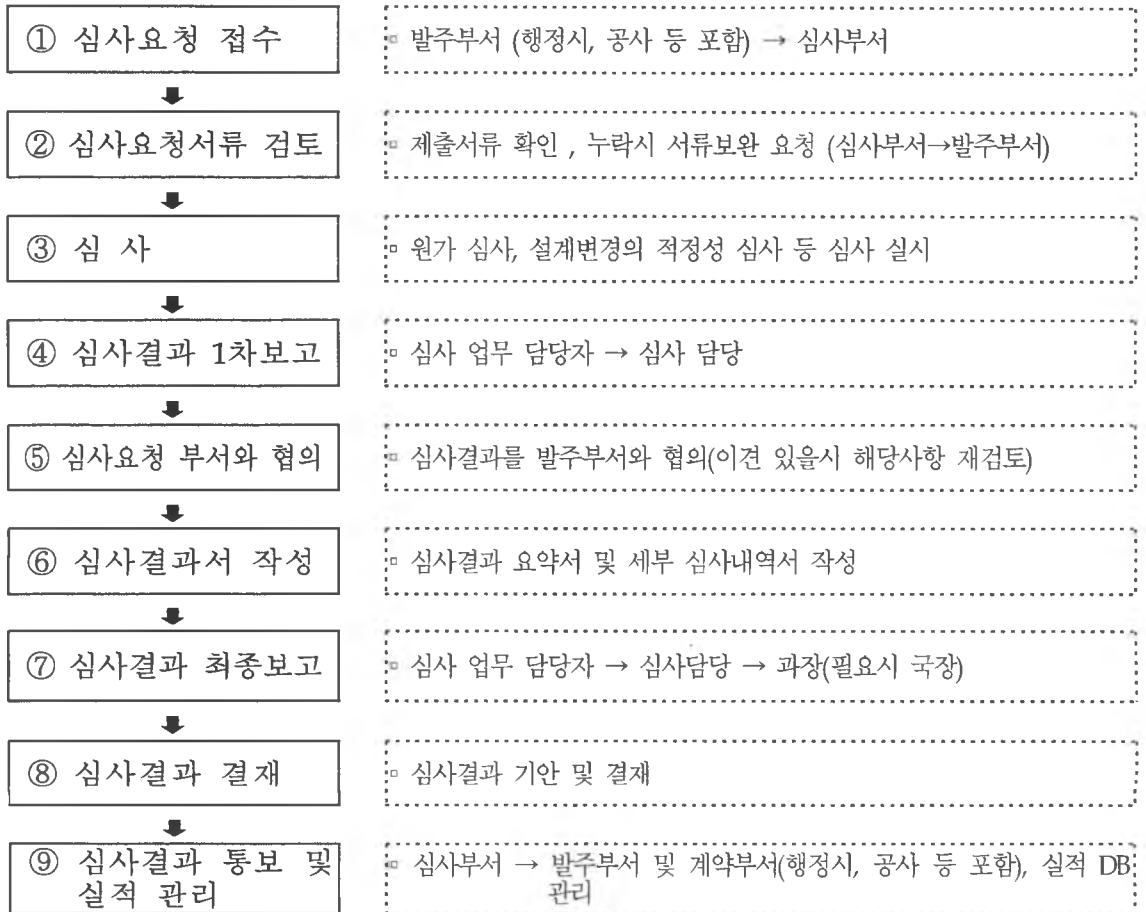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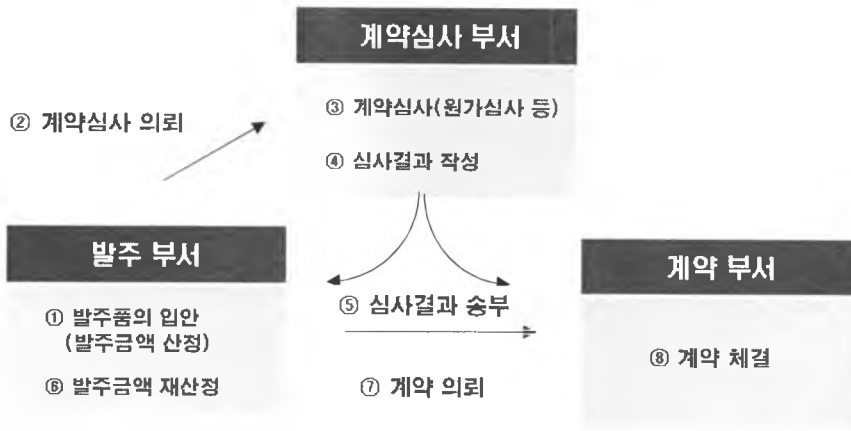
다.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도 의회 사무처 • 지방공기업, 공단 • 출연기관(50%이상) • 행정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 원가산정의 적정성 • 설계·공법의 적정성	• 공 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 용 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 계약심사 제외 대상 사업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 2) 계약심사대상금액미만인 경우
- 3) 조달청에 직접 계약 요청하여 발주하는 사업
-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할 여유가 없는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개산계약, 일괄입찰, 공모제안사업 등)
- 5)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계약 인 경우라도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을 할 경우

다.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2. 계약심사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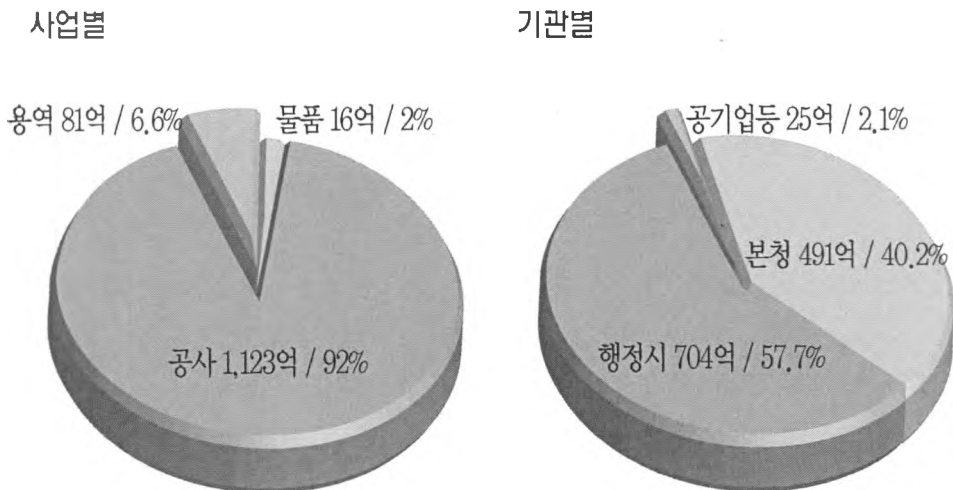
2008. 8.13일 계약심사부서(1담당 5명)를 설치, 동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 2012. 12월말 현재 총 1,687건 18,212억원을 심사요청액에 16,992억원을 심사하여 조정 결과 1,220억(6.7%)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고 있음.

가. 계약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심사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조정액	조정금액	조정율	비 고
합 계	1,687	1,821,286	1,699,271	△122,015	△6.69%	
2008. 10. ~ 12.	157	171,700	160,652	△11,048	△6.43%	
2009. 1 ~ 12.	453	508,846	482,218	△26,628	△5.23%	
2010.1 ~ 12.	345	302,936	280,141	△22,795	△7.52%	
2011.1 ~ 12.	340	430,523	399,619	△30,904	△7.17%	
2012.1 ~ 12.	392	407,281	376,641	△30,640	△7.52%	

나. 기관별 및 사업별 예산절감



다.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

□ 2008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율	비 고
합 계	157	171,700	160,652	11,048	6.43%	
공 사	74	154,454	143,956	10,498	6.80%	
용 역	11	4,464	4,313	151	3.38%	
물 품	72	12,782	12,383	399	3.12%	

□ 2009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합 계	453	508,846	482,218	△26,628	△5.23%	
공 사	241	440,661	417,008	△23,653	△5.37%	
용 역	53	48,139	45,690	△ 2,449	△5.09%	
물 품	159	20,046	19,520	△ 526	△2.65%	

□ 2010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합 계	345	302,936	280,141	△22,795	△7.52%	
공 사	189	253,778	232,789	△20,989	△8.27%	
용 역	42	35,669	34,085	△ 1,584	△4.44%	
물 품	114	13,489	13,267	△ 222	△1.64%	

□ 2011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합 계	340	430,523	399,619	△30,904	△7.17%	
공 사	213	386,122	357,838	△28,284	△7.32%	
용 역	38	31,663	29,291	△ 2,372	△7.49%	
물 품	89	12,738	12,490	△ 248	△1.94%	

□ 2012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합 계	392	407,281	376,641	△30,640	△7.52%	
공 사	256	359,189	330,310	△28,879	△8.04%	
용 역	38	36,333	34,778	△ 1,555	△4.28%	
물 품	98	11,759	11,553	△ 206	△1.75%	

Ⅱ.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순 서

1. 토목공사 분야
2. 건축공사 분야
3. 전기공사 분야
4. 기술용역 분야
5. 일반·학술용역 분야
6. 물품구매·제조 분야
7. 인쇄물 분야

1. 토목공사 분야

김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
- 사 업 비 : 8,951백만원(도급 7,069만원, 관급 1,882백만원)
- 사업내용 : 배수로 4조 · 4.99km, 저류지 2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8,951	8,018	△933	△10.4

III 주요 심사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본 사업은 하천이 형성되지 않은 상습침수지역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시설사업으로서
 - 배수로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인 암거 또는 개거시설로 설계상 현장시공(콘크리트 타설 등)이 대부분 적용됨
- 경제성과 사업의 효과·목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콘크리트구조물 현장시공 방법과 완제품(조립식 P·C암거) 설치방법에 대한 공법검토 필요

□ 개선사항 및 효과

- 현장시공과 완제품(조립식 P·C암거)설치 공법에 대한 공사비 비교(공사원가계산)결과 완제품(조립식 P·C암거) 설치공법이 현장

시공에 비해 10% 이상 절감되고 있음

- 완제품 시공시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어 재해예방 및 농업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추후 사업계획 변경시 완제품인 조립식 P·C암거는 재사용이 가능함
- 상기와 같이 경제성 및 사업의 효과 등 검토결과에 의해 배수로 콘크리트구조물 현장시공 방법을 완제품(조립식 P·C암거) 설치 방법으로 공법조정 사업추진

《 공사비 비교 》

구분	규격(m)	공사비(원)/m당			절감율 (%)
		현장타설	pc개거·암거	증감(△)	
pc개거	2.0×2.0	894,000	798,000	△96,000	10.7
pc암거	2.0×2.0	1,371,000	1,134,000	△237,000	17.3

《 현장사진 》



〈pc 개거〉

〈pc 암거〉

안덕지역(1공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감산·창천리 등 일원
- 사 업 비 : 4,273백만원(도급 3,280백만원, 관급 993백만원)
- 사업내용 : 오수·우수관거 L=5.75km, 배수설비 690가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273	3,929	△344	△8.0

III 주요 심사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현장실정을 고려치 않은 포장복구 단가계산 조정
 -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관로매설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포장복구 시 도로침하 및 평탄성 저하, 균열 등 민원발생 상존
 - 이러한 문제를 해소키 위해 포장복구 시 표층부 까지 기층재로 포설·다짐(가 포장)을 완료 최대한 침하(다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절삭(기층재 t=5cm) 후 표층포설다짐으로 마무리 시공
- ⇒ 굴착폭(기층재) + 여유폭(표층부, 굴착폭에서 양쪽 1.0m 이상) 절삭 후 표층포설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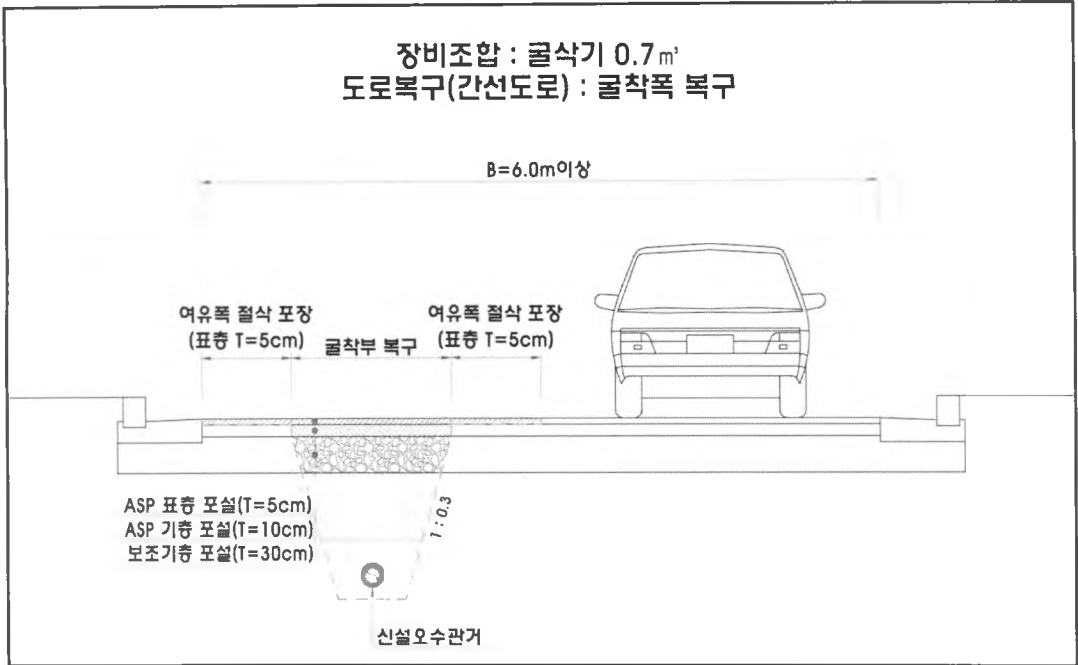
- 상기 표층부 포장복구는 굴착부와 여유폭을 동시에 포장복구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단가계산 시 표층부 표층포설다짐에 대하여 굴착복구와 여유 폭 복구를 분리하여 단가계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 시공방법과 상이한 단가계산이 반영됨

□ 개선사항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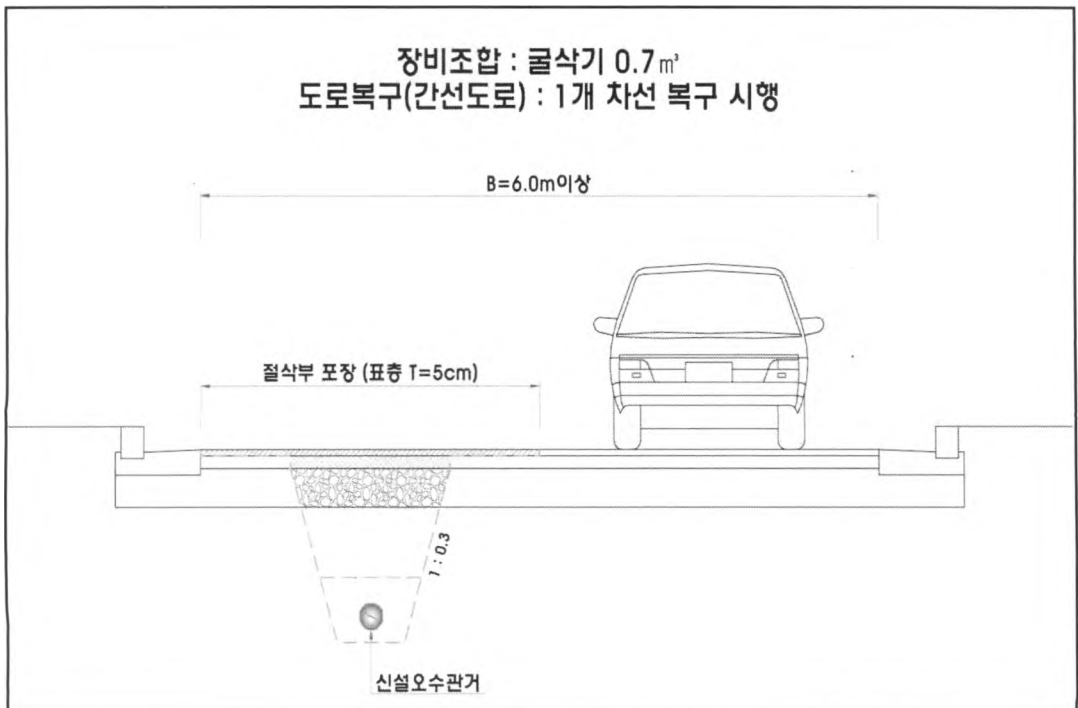
- 포장복구(표층포설다짐) 실 시공방법에 맞게 단가계산 적용
 - 당초 : 표층시공 2,000m²/일당(시공폭 1.4m≤시공폭<3.0m)
 - 변경 : 표층시공 5,000m²/일당(시공폭 3.0m≤시공폭

《시설단면》

<당 초>



<변 경>



《현장사진》



포장갓타 및 파괴



터파기



표층부까지 기층포설다짐



굴착폭 및 여유폭 절삭



표층포설다짐

송당 재해위험지구(동신술굴내 지류) 정비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
- 사 업 비 : 5,482백만원(도급 4,587백만원, 관급 895백만원)
- 사업내용 : 호안정비 L=1.28km, 저류지 77,450m³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482	4,704	△778	△14.2

III 주요 심사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도에서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및 저류지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의 저류지 시설은 물을 계속 가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지질특성(다공질 현무암 및 지하 대수층 등)을 최대한 활용한 투수율 확보 시공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하침투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함으로서, 유량조절·홍수피해 저감·지하수 함양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본 사업 저류지 및 호안 경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단면 검토 필요

- 저류지 경사면 : 필터매트(부직포)+뒷채움재(잡석)+채움콘크리트+전석(0.5m³급 내외)쌓기 ⇒ 경사면 기울기가 1:0.5 이상으로 사면 안정성이 확보되어 투수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채움 콘크리트타설 불필요
- 호안(하천) 경사면 : 필터매트(부직포)+뒷채움재(잡석)+채움콘크리트+전석(0.5m³급 내외)쌓기 ⇒ 경사면 기울기가 1:0.3, 구조물(전석) 보호를 위한 채움 콘크리트타설 시공으로 필터매트(부직포) 불필요

□ 개선사항 및 효과

- 저류지 및 호안(하천)정비 경사면 보호를 위한 전석쌓기시 시설 용도(목적)에 맞게 시설단면 조정
 - 저류지 : 경사면 안정성이 확보되어 토사유출 방지 및 투수율 증대를 위한 단면조정(채움 콘크리트타설 제외) ⇒ 필터매트(부직포)+뒷채움재(잡석)+전석(0.5m³급 내외)쌓기 적용
 - 호안(하천) : 구조물 보호를 위한 채움 콘크리트타설 시공으로 필터매트(부직포) 제외 ⇒ 뒷채움재(잡석)+채움 콘크리트타설+전석(0.5m³급 내외)쌓기 적용

《현장사진》

〈저류지 전석쌓기 부직포〉



〈호안 전석쌓기 뒷채움콘크리트〉



〈저류지 준공사진〉

동홍천 저류지 조성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1889번지 일원
- 사 업 비 : 3,926백만원(도급 3,608백만원, 관급 318백만원)
- 사업내용 : 저류지시설 1식
 - 흙막기 : 토사 50,591m³, 풍화암 9,737m³, 보통암 9,804m³
 - 발 파 : 소규모 24,276m³, 중규모 24,276m³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926	3,163	△763	△19.4

III 주요 심사내용

- 저류지 시설로서 사업목적과 성격에 맞게 방수시트 제외
 - 저류지 시설은 집중호우시 빠른 시간내에 우수의 분산과 처리(지하침투 등)가 가능하도록 시설되어야 함에 따라 시설목적에 맞지 않은 방수시트 제외
- 지질조사 결과(해당 암질)에 의한 흙막기 수량 및 단가 조정
 - 흙막기 : 토사 9,737m³ → 8,309m³, 클링커 0m³ → 40,732m³적용
 - 발 파 : 풍화암 48,532m³ → 9,842m³ 적용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해당 암질에 맞게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산지천 제4저류지 조성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이동 889번지(신산공원내)
- 사 업 비 : 2,478백만원(도급 2,194백만원, 관급 284백만원)
- 사업내용 : 저류지시설 A=8,390m²
 - 절토 : 토사 16,120m³, 암 11,320m³
 - 어울공원 12,496m²(야외풀장, 노천탕, 체육시설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478	1,996	△482	△19.5

III 주요 심사내용

- 호안공 콘크리트타설(전석쌓기 뒷채움) 수량 조정
 - 절토사면 경사도(1:2)의 안정성과 토사유출방지 부직포 시공으로 전석쌓기 채움 콘크리트타설 적용 제외
- 구조물공 강관비계 수량 조정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의한 구조물 구체 기초 상단선을 기준으로 수량 재 산출결과 반영(394m²→338m² 적용)
- 구조물공 강관동바리 단가 조정
 -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공종 적용방법에 맞게 교량구조물 → 암거구조물 적용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 형틀목공 0.16인 → 0.06인, 보통인부 0.06인→0.03인 적용

- 아스팔트포장에 따른 코팅재 자재단가 조정
 - 단가계산서상 ℓ 당 적용수량으로 드럼당으로 자재단가 오류 적용(프라임·택코팅 자재비 170,000원→550원/ ℓ 반영)
- 데크공 잡철물 제작 및 설치 단가 조정
 - 데크시설 기초에 해당하는 장선(구조형 각관)시설 등 잡철물은 현장내에서 제작과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잡철물 제작품 적용
 - 잡철물 설치품은 공장제작 등을 통해 제작된 철물을 공사현장에 반입 설치하는 품으로서 필요시 계상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공사의 성격에 맞게 잡철물 설치품 제외
- 조경수목(사철나무, 피라칸사스) 식재단가 조정
 - 현장실정 식재방법에 맞게 단식 → 군식 적용
- 전석자재 및 운반 단가 조정
 - 전석 및 뒷채움잡석 : 석산구입 → 현장암 유용
 - 본 현장은 다량의 사토재(암)가 발생함에 따라 석산구입에서 현장 사토재(암)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석 확보계획 조정결과에 의한 운반비 재 산출결과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상모산이수동 ~ 일파리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1공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파리 일원
- 사 업 비 : 910백만원(도급 619백만원, 관급 291백만원)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L=5.8k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910	835	△75	△8.2

III 주요 심사내용

- 차선도색 수량 조정(B-B구간, C-C구간)
 - 포장파쇄부에 적용된 수량 공제 후 설계도에 맞게 재 산출결과 반영($643\text{m}^2 \rightarrow 34\text{m}^2$ 적용)
- 아스콘포장 단가 조정 : 품셈적용 오류
 - 현장실정에 맞게 인력식 소규모 일반아스팔트포장 적용
- 도로표지병 수량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
 - 현장실정 및 설계도에 맞게 총 연장의 신설 30%, 기존표지병 유용 70%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 · 포장공사(2공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
- 사 업 비 : 6,251백만원(도급 4,435백만원, 관급 1,816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확 · 포장 L=793m(B=20.0m)
 - 교량 1개소(PSC e-Beam 30m), 지선 L=284m(B=12.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6,251	5,599	△652	△10.4

III 주요 심사내용

- L형측구 보차도경계석 설치 수량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 : 4,271m → 1,996m 적용
- 배수암거 시설방법 조정
 - 현장실정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 현장 콘크리트타설 → 완성품 pc암거 시공 적용
- 교량공 Beam 제작설치 단가 조정
 - Soleplate : 잡철물제작 → 밀링가공 적용
- 목재보도포장 수량 조정
 - 보도부 녹지대 및 가로수분 설치부 수량 공제 후 설계도에 맞게 재 산정결과 반영(4,714m² → 3,952m² 적용)

성산2공구(시흥,오조,난산,수산1,수산2) 하수관거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오조리, 난산리 등 일원
- 사 업 비 : 8,554백만원(도급 6,900백만원, 관급 1,654백만원)
- 사업내용 : 오수관거 L=7,716m, 우수관거 L=1,537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8,554	8,038	△516	△6.0

III 주요 심사내용

- 미진동 암 터파기 단가 조정
 - 품셈에 맞게 치즐소모량 조정(0.17개/㎡→0.0008개/㎡ 적용)
- 아스콘 포장복구(표층포설다짐) 단가 조정
 - 굴착부 복구와 여유 폭 복구를 분리한 단가계산으로 실 시공방법과 상이한 단가계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작업방법(굴착부와 여유폭 동시 시공)에 맞게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당초 : 표층시공 2,000㎡/일(시공폭 1.4m≤시공폭 <3.0m)
 - 조정 : 표층시공 5,000㎡/일(시공폭 3.0m≤시공폭)
- 조립식 간이 흙막이시설 수량 조정
 - 관로 부설시 굴착 벽면의 토사붕괴 예방을 위하여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으로 설계 되었으나, 난산처리분구는 토질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흙막이 시설이 필요치 않아 가설구조물 없이 굴착하는 오픈컷(open-cut) 공법 적용

곰생이물 소하천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상예동 곰생이물 일원
- 사 업 비 : 775백만원(도급 692백만원, 관급 83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525m(B=6.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75	564	△211	△27.2

III 주요 심사내용

- 사토운반 및 타 공사현장 암 유용수량 조정
 - 발생암 부족으로 타 공사현장에서 암석(전석 및 돌담 등)반입·사용에 따라 설계도에 맞게 토공유동계획 재 수립결과 반영
 - 흙쌓기(노상, 노체)에 반영된 암반수량 제외 토사적용
 - 돌담이설시 기존돌담 유용(50%)
- 돌담쌓기 수량 및 단가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
 - 설계도에 맞게 수량 재 산출결과 반영(5,170m²→1,144m²)
 - 돌담쌓기 단가 2012년 상반기 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민복지타운 광장조성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582번지 일원
- 사 업 비 : 2,324백만원(도급 2,028백만원, 관급 296백만원)
- 사업내용 : 북극성분수 1식, 칠성대분수/계류시설 1식, 부대 조정 시설 등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324	1,770	△554	△23.9

III 주요 심사내용

- 마사토포장 단면 조정결과에 의한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포장단면 조정 : 보조기층(10cm)+모래(5cm)+마사토(20cm)
→ 보조기층(10cm)+마사토(20cm) 적용
- 석재커버 단가 조정
 - 납품업체 확대 견적에 의한 재 조사단가 적용
 - 사각 : 1,350천원/개당 → 695천원/개당 적용
 - 원형 : 1,200천원/개당 → 725천원/개당 적용
- 칠성대분수 우산 노즐설치 단가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잡철물) 오류로 설계도에 맞게 잡철물 톤 수적용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 노즐설치 17,273천원/개당 → 3,313천원/개당 적용

신도2지구(신도구역) 배수개선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일원
- 사 업 비 : 5,920백만원(도급 4,252백만원, 관급 1,668백만원)
- 사업내용 : 배수로 7조 · 6.8k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920	4,729	△1,191	△20.1

III 주요 심사내용

- 되메우기 및 다짐 단가 조정
 - 엑셀 프로그램 수식적용 오류로 설계도 및 표준품셈에 맞게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22,736원/㎡당→3,400원/㎡당 적용)
- 천단 콘크리트타설 및 합판거푸집 수량 조정
 - 천단 콘크리트타설 두께 : 20cm → 15cm 적용
 - 천단 콘크리트타설 후에 시공되는 농로포장은 천단 콘크리트와 연결 시공됨에 따라 천단 콘크리트 부분은 거푸집 설치가 필요 없어 시공방법에 맞게 거푸집수량 조정결과 반영
- VR관 부설 및 접합 수량 조정 : 엑셀 수식적용 오류
 - 설계도에 맞게 수량 재 산출결과 반영
 - VR관(800~1200mm) : 1,794본 → 1,068본 반영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3공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원
- 사 업 비 : 731백만원(도급 427백만원, 관급 304백만원)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L=2.92km(B=3.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31	688	△43	△5.9

III 주요 심사내용

- 2012년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한 사업규모 및 공사기간에 맞게 제비율 조정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0.5% → 9.6% 적용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의 6.1% → 6.2% 적용
- 자전거도로 표층 아스콘포설·다짐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시공폭(1.4m<시공폭<3.0m)에 맞게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차선제거 수량 조정 : 노면절삭부 수량 공제(877m²→438m²)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사업에 따른 건물철거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161-5~163-33번지 일원
- 사 업 비 : 512백만원(도급 512백만원)
- 사업내용 : 건물철거 A=3,110m²(슬레이트 등 석면 : 1,984m²)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12	467	△45	△8.8

III 주요 심사내용

- 공사원가계산서상 요율로 산정된 환경보전비 적용 제외
 - 내역서상 환경오염방지시설(보호막 및 비산먼지 방지시설) 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보전비 제외
- 별도 계상된 폐기물 2차선별비 제외
 - 폐기물 1차선별비가 포함되어 있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에 의하면 동 처리단가(수수료)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증가처리 후 발생하는 2차폐기물(최종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적용 제외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73번지 일원
- 사 업 비 : 566백만원(도급 539백만원, 관급 27백만원)
- 사업내용 : 수목식재, 향토·화산토·관석포장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66	475	△91	△16.1

III 주요 심사내용

- 제주향토포장 단가 조정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설치도) 품목으로 관급자재 적용
- 인조화강석포장 자대 및 단가 조정
 - 현장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게 인조화강석 → 올래 투수블록 적용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제주돌담(H500×W500, H200×W500)쌓기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돌쌓기 적용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자재단가 : 제주지역 관련업체 확대 견적에 의한 조사단가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용수4지구 발기반정비사업 시설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일원
- 사 업 비 : 1,035백만원(도급 719백만원, 관급 316백만원)
- 사업내용 : 고가저수조 1개소(200ton), 송급수관로 9조 · 6.5k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035	902	△133	△12.9

III 주요 심사내용

- 거푸집(유로폼)설치 단가 조정 : 설계도서간 단가적용 오류
 - 단가계산서상에는 면적(m²)으로 단가를 산출하였으나 내역서 적용시 거푸집설치 연장(m)으로 수량을 적용 설계도서간 상이한 금액 산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계도서간 단가와 수량이 일치 되도록 재 산출결과 반영
 - 거푸집설치 4,801m² · 78,064천원 → 4,801m · 12,477천원 적용
- 송수관로 관종 변경 및 부설단가 조정
 - 송수관로 : 현장실정에 맞게 스테인레스강관 → 주철관 적용
 - 경제성 및 유지관리 등을 포함함 관종 검토결과에 의한 관종(주철관)에 맞게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제주시 새별오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새별오름) 일원
- 사 업 비 : 1,146백만원(도급 925백만원, 관급 221백만원)
- 사업내용 : 부지내 도로(보조기층)포장 $A=4,564\text{m}^2$,
잔디블럭 $A=6,648\text{m}^2$, 오수처리시설($50\text{m}^3/\text{일}$)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146	984	$\Delta 162$	$\Delta 14.1$

III 주요 심사내용

- PE관 접합 및 부설 수량·단가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
 - 내역서에 적용된 단가는 개소당 단가인 반면 수량 적용시에는 m당으로 적용하였기, 설계도서간 일치되도록 수량·단가 조정
 - 수량 : 826개소(54,588천원) → 826m(9,095천원)
 - 단가 : 66,088원/개소당 → 11,011원/m당
- 오수처리시설 관급자재 적용
 - 특허공법(현수다단계 고도처리)으로서 사업의 특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급자재 적용(본 사업과 분리 별도시행)

중정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정로(수협사거리~동문로타리) 일원
- 사 업 비 : 2,425백만원(도급 1,882백만원, 관급 543백만원)
- 사업내용 : 보행환경 조성 L=0.6km(B=15.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425	1,827	△598	△24.7

III 주요 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게 아스콘포장 시공방법 변경(포장깨기 후 재포장
→ 절삭후 덧씌우기)에 따른 수량 조정
 - 아스콘포장 깨기 : 785m³ → 212m³
 - 아스콘포장 절삭 : 0m² → 4,517m²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 1,423m³ → 0m³
 - 프라임코팅 및 기층아스콘 포설·다짐 : 4,743m² → 0m²
- 경계석 조명시설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으로 관급자재 적용
- 데크시설(합성목재) 철거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설치비의 50% 적용

제주시 농어촌마을(서광지구) 하수도정비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우도면 서광지구 일원
- 사 업 비 : 2,595백만원(도급 1,673백만원, 관급 922백만원)
- 사업내용 : 오수관로(D200mm) L=3.62km, 배수설비 130가구,
오수처리시설(100ton/일)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595	2,317	△278	△10.7

III 주요 심사내용

- 현장실정 및 실 시공방법에 맞게 관로터파기 단면조정(암 기울기 1:0.3→1:01적용)에 따른 토공수량 재 산출결과 반영
 -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깨기, 노면절삭, 터파기 수량 등
- 가시설(조립식 간이흙막이) 수량 제외
 - 암반 형성부에 대하여는 가시설이 필요 없고, 아울러 암반 터파기 기울기 조정으로 굴착폭원이 적어 가시설 불필요
- 해상운반 수량 및 단가 조정
 - 보조기층 및 석분 단위중량 조정결과에 의한 단가 재 산정
⇒ 단위중량 1m³당 1,800kg → 1,750kg 적용
 - 해상운반비(성산→우도) : 관련업체 견적에 의한 재 조사단가 적용
⇒ 덤프 1대 왕복 160,000원 → 120,000원 반영

상호천(넛골)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상호동 804-1번지 일원
- 사 업 비 : 1,248백만원(도급 1,138백만원, 관급 110백만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0.99km(B=12.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248	999	△249	△19.9

III 주요 심사내용

- 흙막이 수량 및 단가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
 - 설계도에 의한 추정암반선 적용 수량 재 산출결과 반영
 - 건설표준품셈 적용방법에 의한 현장여건 반영 대형브레이커 작업능력 상한치 적용(Q값 4.6m³/hr)
- 전석쌓기 수량 조정
 - 설계도 추정암반선에 맞게 전석쌓기 수량 재 산출
⇒ 암반 형성지역은 전석쌓기가 필요치 않아 추정암반선 이하에 대하여는 전석쌓기 수량 적용 제외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신례 ~ 학림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일원
- 사 업 비 : 568백만원(도급 331백만원, 관급 237백만원)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구조개선 L=0.98k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68	437	△131	△23.0

III 주요 심사내용

- 아스콘포장 절삭 수량·단가 조정 : 설계도서간 단가적용 오류
 - 내역서에 적용된 단가는 체적(m³)당 단가인 반면 수량 적용시에는 면적(m²)당으로 적용하였기, 설계도서간 일치되도록 수량·단가 조정
 - 포장절삭 7,809m³ : 63,542천원 → 8,261천원 반영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사항 조정
 - 택코팅 : 1,087m² → 8,896m² 적용
 - 판석포장(인조) : 1,137m² → 931m² 적용
 - 보조기층 포설다짐 : 182m³ → 149m³ 적용
 - 상기 수량산출 조정결과 반영 자대대 조정

행원지구(행원구역) 배수개선사업 시설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원
- 사 업 비 : 8,237백만원(도금 6,283백만원, 관급 1,954백만원)
- 사업내용 : 배수로 4조·5.12km, 저류지 2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8,237	7,223	△1,014	△12.3

III 주요 심사내용

- 암거 시설방법 조정 : 현장타설 → 조립식 pc암거 · 개거 적용
 - 현장시공과 완제품(조립식 pc암거) 설치공법에 대한 공사비 비교결과 완제품 설치공법이 현장시공에 비해 예산이 절감되고 있고,
 - 완제품 시공시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되어 재해예방 및 농업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한 추후 사업계획 변경시 완제품인 pc암거는 재사용이 가능함
 - 상기와 같이 경제성 및 사업의 효과 등 검토결과에 의해 배수로 콘크리트구조물 현장시공 방법을 완제품(조립식 pc암거) 설치방법으로 공법조정
 - 현장타설에서 조립식 pc암거 적용 L=392m

o 조립식 pc암거 단가 조정

- 진·출입로(4.0m) pc암거 설치 : m당 단가에서 개소당 단가로 재 산출결과 반영(강선인장, 수밀코킹, 수팽창고무지수재 등 단가 조정)
- 강선인장 : 프런트 재킹 공법의 강선제작 설치 품 적용

o 천단 콘크리트타설 및 거푸집 수량 조정

- 콘크리트타설 : 천단 콘크리트 두께 20cm → 15cm 적용
- 거푸집 : 천단 포장두께 조정결과 및 포장부와 연결된 거푸집수량 중복계상으로 실 시공방법에 맞게 재 산출결과 반영

o 농경지 진·출입로 가도설치 수량 제외

- 본 사업구간은 하천이 형성되지 않은 농경지에 대한 배수로 개설사업으로 하류에서 상류로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여건상 별도의 가설도로 시설이 필요치 않아 가도설치 수량 적용 제외(관련공종 : 콘크리트포장, 흙관시설 등)

o 축증계 설치 단가 조정

- 축증계 시설 : 공사기간에 의한 손율 적용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o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천 제1저류시설 보수·보강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등동 한천 제1저류지 일원
- 사 업 비 : 947백만원(도급 947백만원)
- 사업내용 : 저류시설 보수·보강 1식(숯크리트 타설 및 전석쌓기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947	670	△277	△29.3

III 주요 심사내용

- 숯크리트 수량 및 단가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
 - 전석자재 공극 채움을 위한 현장실정 및 작업방법에 맞게 숯크리트 타설 수량 조정
 - 설치가 가능치 않은 와이어메쉬(용접철망 #6-100×100) 수량 제외
- 돌쌓기(메쌓기)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m²당 : 석공 0.5인, 보통인부 0.4인 → 석공 0.08인, 보통인부 0.04인, 장비 0.36시간 적용
- 전석 및 석축자재 단가 조정
 - 석재사(토석채취장) → 병문천 저류지 사토재(암) 적용

조천우회도로 기존도로 확장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함덕리 일원
- 사 업 비 : 7,233백만원(도급 4,642백만원, 관급 2,591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확(개설) · 포장 L=1.76km(B=26.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233	6,689	△544	△7.5

III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사항 조정
 - 임목파쇄 : 1,378m³ → 114m³ 적용
 - 사토(잔토처리) : 암 20,567m³ → 토사 11,410m³, 암 12,544m³ 적용
 - 교량공 구조물 터파기(토사) : 6,338m³ → 3,638m³ 적용
- 교량공 뒷채움 잡석부설 단가 조정
 - 국고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및 실 작업방법에 맞게 기계 100% 적용
- 보강토 옹벽 되메우기 및 다짐 수량 조정
 - 보강토 옹벽 시설품에 되메우기 및 다짐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상된 되메우기 수량 제외
- 프라임코팅 및 택코팅 단가 조정 : 자재대 중복 계상

- 코팅재(아스팔트유제)가 사급자재로 별도 계상되어 있어 단가계산서에 포함된 코팅 자재단가 제외
- o 녹지대(식수대) 설치 단가 조정
 - 속채움 토사 실 작업방법에 맞게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 ⇒ 녹지대(형식1) : 99,755원/m당 → 26,607원/m당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o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585번지 일원
- 사 업 비 : 1,096백만원(도급 748백만원, 관급 348백만원)
- 사업내용 : 호안정비 L=0.34km, 교량 1개소(L13.7×B10.5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9,253	8,299	△954	△10.3

III 주요 심사내용

- 강관말뚝 천공·항타 수량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
 - 설계도에 맞게 재 산출결과 반영 : 539m → 513m 적용
- 강관말뚝 보링(천공)비 단가 조정 : 중복 적용
 - 강관말뚝 천공·항타 단가에 천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상된 강관말뚝 보링(천공)비 제외
- 가도 포장용 기층 아스콘 자재 조정
 - 임시 포장재로 실정에 맞게 일반아스콘 → 재생아스콘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림읍 한림리 상습침수지구 정비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531-4번지 일원
- 사 업 비 : 1,270백만원(도급 876백만원, 관급 394백만원)
- 사업내용 : PC BOX(1.0×1.0) L=0.936km, 포장 36.48a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270	1,034	△236	△18.5

III 주요 심사내용

- 구조물 터파기 수량 조정 : 4,275m³ → 3,826m³ 반영
 - 현장실정 및 시공방법(완제품 설치)에 맞게 pc암거 시설 터파기 여유폭 조정결과 반영 : 여유폭 50cm → 30cm 적용
- 사토운반 수량 및 단가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
 - 전체 사토수량을 암으로 적용되어 설계도에 맞게 암과 토사를 구분 수량 재 산출결과 반영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t1값 조정
⇒ 적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
- PC BOX(1.0×1.0)설치 단가 조정 : 중량산출 오류
 - 중량구조물 설치 규격(중량)적용 오류로 설계도 및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중량구조물 규격 : 3,000~3,500kg/m당 → 1,500~2,000kg/m당 적용 ⇒
PC BOX설치 m당 단가 : 296,296원/m당 → 168,189원/m당 적용
- o 오수관로설치 자재 및 단가 조정
 - 오수관로 자재 : 유리섬유복합관 → 내충격 P,V,C관 적용
 - 시설자재 변경으로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해당 관종에 맞게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 o 스틸그레이팅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으로 관급자재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o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 o 토목공사 설계지침 및 적산지침(한국토지주택공사)
- o 토목공사 설계기준(한국수자원공사)

연안지역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토목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3번지 지선 일대
(행원풍력발전소 인근 행원포구에 접한 공유수면)
- 사 업 비 : 3,026백만원(도급 2,693백만원, 관급 333백만원)
- 사업내용 : 발전기 기초 1식, 진입도로 개설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026	2,181	△845	△27.9

III 주요 심사내용

- 공사원가계산서 요율로 산정된 환경보전비 제외
 - 내역서상 환경오염방지시설(오탁방지막)이 반영되어 있어 공사원가계산서상 요율로 산출된 환경보전비 적용 제외
 - ⇒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관급자재/1.1)×1.81%+3,294천원
 -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1.81%+3,294천원] ×1.2 적용

- 사석($0.015\text{m}^3 \sim 0.03\text{m}^3$)고르기 단가 조정
 - 단가계산 오류로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Rightarrow \text{m}^2\text{당 작업시간} : 1.2\text{시간}/\text{m}^2\text{당} \rightarrow 0.172\text{시간}/\text{m}^2\text{당 적용}$
- 피복석($0.3\text{m}^3 \sim 0.5\text{m}^3$)고르기 단가 조정
 - 단가계산 오류로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Rightarrow \text{m}^2\text{당 작업시간} : 2.63\text{시간}/\text{m}^2\text{당} \rightarrow 0.153\text{시간}/\text{m}^2\text{당 적용}$
- 사석($0.015\text{m}^3 \sim 0.03\text{m}^3$)제거 수량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로 설계도에 맞게 조정
 $\Rightarrow \text{사석제거 } 3,417\text{m}^3 \rightarrow 20,685\text{m}^3 \text{ 적용}$
- 오탁방지막 설치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 골재구입 수량 조정
 - 현장실정에 맞게 해상작업 할증 $\rightarrow$ 육상+해상 평균치 할증 적용
 $\Rightarrow \text{사석}(0.015\text{m}^3 \sim 0.03\text{m}^3) \text{ } 20\% \rightarrow 12\%, \text{ 피복석 } 15\% \rightarrow 9.5\% \text{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 조달청 2012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상수도관망(오라중블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공사(1단계)

I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담1·2동 일원
- 사 업 비 : 691백만원(도급 514백만원, 관급177백만원)
- 사업내용 : 유량계설(D80~300mm) 13개소, 밸브류 26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18	434	△84	△16.3

III 주요 심사내용

- 터파기(줄파기 : 시험굴착) 수량 조정
 - 시험굴착(줄파기)이 필요치 않은 한천 복개부를 제외한 수량 재 산출결과 반영
- ASP포장 수량 조정
 - 한천 복개부를 제외한 터파기(줄파기 : 시험굴착)구간 조정결과에 의한 수량 재 산출
- ASP절삭 단가 조정 : 보통인부 1인 중복 계상
 - ASP절삭 공종 중 절삭과 청소의 보통인부 1인씩 각각 적용사항에 대하여, ASP표층 포설 및 다짐 공종의 보통인부(청소)가 포함되어 있어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ASP절삭 품에 포함된 보통인부 1인을 제외한 단가 산출결과 반영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핵심지역 경계표시공사

I 사업개요

- 위 치 : 구좌읍 월정리 거문오름용암돌굴계 핵심지역 일원
- 사 업 비 : 546백만원(도급 546백만원)
- 사업내용 : 경계표시 돌담쌓기(0.8×0.5) L=6.3km,
돌담채집운반 V=3,188m³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46	417	△129	△23.7

III 주요 심사내용

- 돌담 현장채집 · 운반 수량 조정
- 장비와 인력 운반비율 현장실정에 맞게 조정결과 반영
⇒ 돌담 현장채집운반 : 장비(50%) + 인력(50%) → 장비(70%)
+ 인력(30%) 적용
 -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돌담 단위중량 조정결과(m^3 당 2,950kg→
2,226kg 적용)에 의한 단가 산출
⇒ 현무암 단위중량 2,950kg(자연상태), 현무암 체적환산계수
1.325(흐트러진상태) 적용 : $2,950\text{kg}/1.325=2.226\text{ton}/\text{m}^3$ 당

성산일출봉 옛길 복원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번지 일원
- 사 업 비 : 1,166백만원(도급 981백만원, 관급 185백만원)
- 사업내용 : 판석포장 108m, 데크설치(1.5~2.5m) 297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166	994	△172	△14.7

III 주요 심사내용

- 모노레일 철거 단가 조정
 - 모노레일 철거 : 견적에 의한 적용단가를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톤수산정(잡철물) 재 산출결과 반영(설치비의 50%)
- 판석포장 단가 조정
 - 현장실정 및 주변현장 단가적용의 통일성을 고려 점판암(바닥)
설치 품 적용
- 데크 목재가공조립 설치 단가 조정
 - 현장설치 시 가공이 필요한 시설물로 조경공사 적산기준에 의한 목재
가공 및 설치(중등구조) → 목구조체 설치(보통구조) 적용
- 잡철물제작설치 단가 조정
 - 현장실정 및 건설표준품셈 적용방법에 맞게 잡철물제작설치 →
잡철물제작 품 반영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동문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문로(중앙로타리~동문로타리) 일원
- 사 업 비 : 1,702백만원(도급 1,232백만원, 관급 470백만원)
- 사업내용 : 보행환경 조성 L=0.72km(B=15.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702	1,315	△387	△22.8

III 주요 심사내용

- 횡배수관 접합 및 부설 단가 조정
 - 생산자재 및 실 시공방법에 맞게 모르타르 접합 → 고무링 접합 적용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수량 조정 : 설계도서간 수량산출 오류
 - 설계도에 맞게 수량 재 산출 : 8,806m² → 7,310m² 적용
 - 수량 재 산출결과에 의한 아스콘(표층) 관급자재 조정
- 현무암(제주 판석)포장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2011년) 점판암 불임 적용
- 조경수목 단가 조정 : 서귀포시 2012 조경수 조사단가 적용
- 화산석(돌담A, 돌담B) 단가 조정
 - 도내업체 확대견적에 의한 재 조사단가 적용

솔동산 거리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I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태평로수협 ~ 밀라노삼거리
- 사 업 비 : 643백만원(도급 491백만원, 관급 152백만원)
- 사업내용 : 보행환경조성 L=480.0m(B=15.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643	495	△148	△23.0

III 주요 심사내용

- 판석(정형)포장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2011년) 점판암 불임 적용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곶술(해송)식재 단가 조정
 - 수목(해송 H4.0×R15) 자재단가에 대하여 제주지역 관련업체 견적에 의한 재 조사단가 반영(서귀포시 산림조합 견적단가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1 건설공사 표준품셈

2. 건축공사 분야

구좌운동장 스텐드설치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체육시설 확충
- 사 업 비 : 675백만원(도급금액 : 499, 관급자재 : 176)
- 사업내용 : 스텐드설치 450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25	527	△198	△27.3

III 주요 심사내용

- 스텐드의 시설은 수평투영면적 전체를 절토하여 매트기초(철근콘크리트조)를 타설하고 측벽을 옹벽콘크리트로 시공한 후 기초판 상단 피트부위를 매립하고 지반을 다짐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 스텐드 설치지역은 운동장 조성 시 경사면으로 시공되어 주변지형이 운동장면 보다 높은 지역이며, 지반의 토질을 암반층으로 적용하고 있어 매트기초를 줄기초로 조정하고 피트층을 삭제하여 레미콘, 철근, 거푸집 등의 물량 조정
- 스텐드 통로의 계단 무근콘크리트 타설을 철근콘크리트에 일체되게 타설

제1청사 별관 통합증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증축 및 환경개선
- 사 업 비 : 4,992백만원(도급금액 : 4,287, 관급자재 : 705)
- 사업내용 : 사무실 증축 2,806.41m²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992	4,202	△790	△15.8

III 주요 심사내용

- FLAT BAR 및 CON'C STOPER 설치 품은 데크플레이트설치 품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계상 품 조정
- 스테드볼트의 설치공정을 수동용접에서 자동용접으로 조정
- 철골가공조립의 품 적용을 설치수량에 맞도록 100톤이상 설치 품을 300톤이상 설치 품으로 조정
- 옥상바닥의 보호몰탈 층은 우레탄방수와 압출법면보온판의 공간에 시공되는 공정으로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호몰탈 층 삭제
- 철거공사에 있어 별도 계상된 지붕면의 송이붙임 철거는 재활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조체 철거물량으로 합산 계상

2012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생태숲의 보완조성
- 사 업 비 : 790백만원(도급금액 : 701, 관급자재 : 89)
- 사업내용 : 식재 및 포장, 계계석 등 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90	753	△33	△4.2

III 주요 심사내용

- 경계목설치는 제단 된 경계목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사항으로 목재 가공설치 품을 경계석설치 품으로 조정
- 목재난간은 제작 목재 및 철물을 볼트 조임으로 마감하는 공정으로 잡철물제작설치는 관절단품으로 조정하고, 목구조물설치품은 고장력볼트조임 품으로 조정
- 파고라의 지붕마감재인 시다세이크는 판재형태의 마감재로서 지붕잇기 설치 품을 지붕널덮기 품으로 조정
- 비닐하우스설치의 금액은 견적에 의한 일괄 설치비용을 적용한 사항으로 시공도로 적용하도록 하여 노무비 적용항목을 재료비로 이동합산

종돈장 검정돈사 개보수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노후된 종돈장 개보수
- 사 업 비 : 508백만원(도급금액 : 495, 관급자재 : 13)
- 사업내용 : 종돈장 분만돈사 개보수 770.75㎡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08	473	△35	△7.0

III 주요 심사내용

- 기존 철재면의 조합페인트 수량산정에 있어 매입된 부분까지 산출되어 매입부분을 제외한 면적으로 조정
- 친환경불연보드의 천정불임은 경량철골천정틀을 설치하여 시공되는 사항이며 경량철골천정틀 설치 품에 천정마감 품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계상된 친환경불연보드의 천정불임 품 조정
- 기타공사의 급이기 등은 견적가에 의한 시공도로서 재료비와 노무비로 환산된 사항을 재료비로 합산 조정

한라산탐방안내소 건립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한라산 탐방인의 편의제공
- 사 업 비 : 2,484백만원(도급금액 : 1,916, 관급자재 : 568)
- 사업내용 : 문화및집회시설 신축 2,083.35㎡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484	2,357	△128	△5.1

III 주요 심사내용

- 블록쌓기의 마감면이 몰탈바르기로 되어 있어 한면치장 블럭쌓기를 블록쌓기로 조정
- 모래다짐위 제주판석깔기 품을 붙임 품에서 깔기 품으로 조정
- 트랜치 등에 소요되는 철물은 아연도금 제품으로 사용하면서 녹막이페인트를 마감하도록 계상하고 있어 녹막이페인트 삭제
- 콘크리트면의 마감을 몰탈바르기로 계획하고 있어 콘크리트면정리 품을 삭제
- 석고판천정붙임 품은 경량철골천정틀 설치품에 포함된 사항으로 별도 계상한 붙임품 삭제

한라산탐방로 및 정상전망데크 조성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한라산 탐방인의 편의제공
- 사 업 비 : 666백만원(도급금액 : 490, 관급자재 : 176)
- 사업내용 : 다중집합데크시설 설치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666	634	△32	△4.7

III 주요 심사내용

- 데크설치 품을 마루널깔기 품에서 마루밑창 품으로 조정
- 테두리목의 설치품을 면적당 단가산출방식에서 규격별 길이당 단가산출방식으로 조정
- 다중집합데크 틀설치의 주 자재는 H형강인 철판자재로서 잡철물제작설치품을 철판가공조립품으로 조정하고, 가세 등을 부대철판가공설치 품으로 조정
- 평 데크틀설치는 규격품을 조립하는 형태로서 잡철물제작설치 품을 경량형강철판조조립설치 품으로 조정
- 형강, 강판 등의 운반비 적용을 구역화물에서 인력소운반으로 조정

2012 WCC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탐방객의 편의제공
- 사 업 비 : 427백만원(도급금액 : 202, 관급자재 : 225)
- 사업내용 : 매트설치 1,027m, 목교설치 20m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27	362	△66	△15.4

III 주요 심사내용

- 매트설치의에 적용되는 지반다짐은 자연상태의 지반에서 시공되는 사항으로 면고르기 품으로 조정
- 매트깔기 품을 건설표준품셈의 암면깔기 품으로 조정
- 금속공사의 잡철물제작설치 공정으로 계상된 H빔 설치를 철골가공 조립 및 세우기 품으로, 아연각관을 부대철골가공설치 품으로 조정
- 목제데크의 마루널깔기 품을 마루밑창깔기 품으로 조정
- 침목계단설치의 기초는 지반을 걷어내고 시공되는 사항으로 터파기 품을 절취 품으로 조정

수도권 종합물류센터 신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물류센터기지 확충
- 사 업 비 : 4,672백만원(도급금액 : 3,634, 관급자재 : 1,039)
- 사업내용 : 창고신축 3,104.90m²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672	4,420	△253	△5.4

III 주요 심사내용

- 철골공사의 제작, 설치, 도장 등의 내역은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시공도에 합산조정
- 철골공사의 제작, 설치, 도장 등의 수량을 할증을 제외한 정미수량으로 조정
- 철골도장면적을 중량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
- 데크플레이트 공정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계상되어 이중으로 계상하고 있어 삭제
- 안전망설치는 원가계산 재경비 항목의 안전관리비에서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삭제
- 현장타설형 팽이말뚝기초 지정공사의 내역은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시공도에 합산조정

해녀문화센터 건립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문화공간 확충
- 사 업 비 : 1,912백만원(도급금액 : 1,373, 관급자재 : 539)
- 사업내용 : 문화및집회시설 신축 5,327.03m²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912	1,724	△188	△9.8

III 주요 심사내용

- 낙하물방지망 과 보호막설치는 원가계산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에서 지출되는 사항으로 내역에서 삭제
- 잔토처리의 기계배합이 백호우+덤프트럭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터 파기 공정의 기계시공 시 덤프트럭에 상차가 가능한 사항으로 기계사용 조정
- 주차장 외부 옹벽은 흙막이용도의 비내력벽으로서 시멘트액체방수를 프라이머바름으로 조정
- 커튼월마감후레싱, 돌출쉬트마감, 연결브릿지천정, 바닥구조틀설치 등의 파이프시공방법을 잡철물제작설치 품에서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품으로 조정
- 콘크리트면처리로 마감되는 주차장천정의 마감재료 삭제

패류종묘생산동 시설개선 개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패류연구시설 보강
- 사 업 비 : 711백만원(도급금액 : 663, 관급자재 : 48)
- 사업내용 : 패류종묘생산동 개축 475m²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11	647	△64	△9.0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축물현장정리의 품을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조 품으로 조정
- 1층 바닥 콘크리트타설 면적의 합판거푸집(4회사용)은 지반지정위에 타설되는 사항으로 수량에서 삭제
- 수조점검발판 제작설치에 적용된 잠철물제작설치 품을 경량철골조조립 설치 품으로 조정
- 과다 계상된 수조부분 목재틀설치 품 조정
- 신설 FRP그레이팅은 동일 규격이 철거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철거품을 재사용으로 조정하여 신규품목 삭제
- FRP그레이팅 철거는 독립된 기성재품을 운반하는 사항으로 소운반품 적용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신축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확충
- 사 업 비 : 794백만원(도급금액 : 726, 관급자재 : 68)
- 사업내용 :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1,184㎡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94	653	△141	△17.8

III 주요 심사내용

- 철골가공조립은 주변에 지장물이 없는 단순공정이며 작업효율성이 높은 장소로서 작업난이도를 0.8로 조정
- 과다 계상된 부대철골가공조립의 수량 조정(170.53톤 → 19.91톤)
- 모르타르 바름의 바름두께 및 바름 횟수를 내벽 20mm를 15mm 2회 바름으로, 외벽 20mm를 18mm 2회 바름으로 조정
- 철골부분의 조합페인트의 면적산출을 기계설비공사의 도장면적 산출방식에 의한 면적으로 조정

경기장 리노베이션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경기장 시설 보강
- 사 업 비 : 7,190백만원(도급금액 : 6,833, 관급자재 : 358)
- 사업내용 : 구조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190	6,852	△338	△4.7

III 주요 심사내용

- 먹메김 및 현장정리 항목에 대한 적용 수량을 건축면적에서 표준 품셈에 의거 연면적으로 조정 변경
- 표면처리, 균열보수, 단면복구보수, 철근부식보수, 탄소섬유보강(SK-N200,1겹) 등을 견적에 의한 일위대가로 계상하고 있어 건설 신기술품셈 적용
- 시멘트 액체 방수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일괄 산정한 것을 바닥 및 벽 면적으로 분리 산정
-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를 위한 하지 철물은 본 구조체(H형강)의 연결시공으로 부대철골가공조립으로 변경 조정
- 인력으로 계상된 타일 철거는 구조체의 방수층까지 철거하여 재시공되는 사항으로 브레이커 장비 사용으로 조정

3. 전기공사 분야

○○청사 ○○증축 전기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별관통합 증축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축 및 민원편의 공간을 개선하고자 함.
- 사 업 비 : 688백만원
- 사업내용
 - 전력간선 설비공사 : 1식
 - 전등, 전열 설비공사 : 1식
 - LED 조명설비공사 : 1식
 - 태양광 발전설비(20kW) : 1식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687,973	624,218	△63,755	△9.27

III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제비율을 2013. 3. 6. 발표 조달청 적용 제비율을 적용하여 조정
- 전력케이블을 포설함에 있어 동시에 여러 열을 포설할 경우 다중 포설품을 적용하여 조정
- 접지선 포설품셈 적용을 수정하여 조정
- 태양광 설비공사에 따른 홍보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 삭제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2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전기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갖춘 ○○해변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명품해변으로 특화 개발하고자 함
- 사 업 비 : 1,309백만원
- 사업내용
 - 보안등기구(갈매기 LED 130W) 설치 : 41개소
 - 솔라브릭(LED 5W) 설치 : 228개소
 - 야자수목등(12W 및 24W) 설치 : 216개소
 - 광섬유 대리석 : 197매
 - LED 조명기구(15W BAR) : 245개소
 - 열주보안등(MH 150W LED 18W) : 3본
 - 대리석 열주등 : 30본
 - 솔라표지병 : 216개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308,849	1,234,195	△74,654	△5.70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의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사업이나 원가계산서 경비항목의 퇴직공제부금비가 누락되어 있어 2012년도 하반기 조달청 발표 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조정

- ○○구역 수목등용 관로 터파기와 돌계단 보안등 관로 터파기 공사를 각각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나 관로 매설에 따른 터파기를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터파기 물량을 조정
- 공사 시 발생하는 전력케이블 및 가로등주 등의 철거에 따른 고재처리비용을 계상하여 조정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따른 품셈을 잘 못 적용하고 있어품셈 적용률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2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로 차량통행 및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보행자 안전 및 도로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사 업 비 : 542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등 1등용 설치 : 39개소
 - 가로등 2등용 설치 : 7개소
 - 신호등 설치 : 4개소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542,040	423,880	△118,160	△21.80

III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도면, 수량산출서)의 수량이 불일치하여 수량 조정
- 배관 및 배선에 따른 공량을 다중포설품으로 반영하여 조정
- 가로등 안정기 설치 공량 조정 : 0.4인 ⇒ 0.25인
- 가로등 기초앙카 설치 공량 조정 : 0.24인 ⇒ 0.028인
- 단독기초 터파기 물량 및 기초물량 계산식 오류로 재산정하여 조정
- 교통신호등철주 기계화시공 설치 노임이 중복계상되어 있어 삭감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2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시 ○○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전기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차 보다 사람 중심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등 시민 및 관광객이 찾아오는 친환경 특화거리 조성으로 침체된 구 도심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사 업 비 : 986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등 설치 : 38개소
 - 경계석 조명 설치 : 680개
 - 시설물제어반 : 3면
 - 조명제어반 : 2면
 - CCTV 제어반 설치 : 4개소
 - 버스정류장 설치 : 3개소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318,340	985,938	△332,402	△25.21

III 주요 심사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 시 5억 미만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사규모의 적용은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이므로 5억 이상 ~ 50억 미만의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요율을 2012년도 하반기 조달처 발표 (2012. 9. 7.)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하여 조정
- 설계도서 상 불일치한 각종 기초의 규격을 일치시키고 콘크리트

물량을 재산출하여 조정

- 전선관 배관 및 케이블 포설에 따른 품셈을 다중포설품으로 적용하여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2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원 기계실 증축 및 시설 보수보강 전기공사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 해양환경 여건에 적합한 참다랑어를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실내 육상수조에서 참다랑어 친어사육 및 수정란 생산을 위한 대형 육상수조의 개축에 따른 전기시설을 증설 및 보수하고자 함
- 사 업 비 : 118백만원
- 사업내용
 - 수변전설비 용량증설공사 : 3Φ4W 650kW ⇒ 950kW
 - 비상발전설비공사 : 3Φ4W 380V/220V 450kW 1대
- 사업기간 : 착수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18,459	112,168	△6,291	△5.31

III 주요 심사내용

-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및 시공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는 도급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시에는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산업안전관리비 산출을 조정
- 관로터파기에 따른 사토는 현장 처리가 가능하여 운반비를 삭제하여 조정

- 폐기물 상차 및 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건축공정에 폐기물 처리 공정이 있어 건축내역에 포함하여 내역에서 제외하여 조정
- 발전기 연료탱크 등 교체에 따른 고재를 내역에 반영하여 조정
- 설계내역서의 재료비 단가와 주요자재 단가비교표의 단가가 서로 상이하여 이를 주정하여 적용함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년도 전기표준품셈
- 201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2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 기술용역 분야

2012 제주시 지방하천(옹포천 외 9개하천)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2012 제주시 지방하천(옹포천 외 9개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설계도서 작성
- 용 역 비 : 993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옹포천 외 9개하천 실시설계 용역 1식
(하천정비 L=10.83km, 교량시설 16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993	911	△82	△8.2

III 주요 심사내용

- 지형측량(기준점 측량) 단가 조정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측량면적에 맞게 기준 배점수 조정
 - 현장실정에 맞게 지역구분 산지 → 구릉지 적용
- 종 · 횡단측량 단가 조정 : km당 투입인력 산출오류
 - 건설표준품셈에 맞게 투입인력 재 산정결과 반영
- 토질조사비 단가 조정
 - 제주시 평균 지반상태를 고려한 지층구조 적용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주시 지방하천(귀덕천 외 10개하천) 재해예방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시 지방하천(귀덕천 외 10개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품질확보 및 건설시공과 아울러 체계적인 원활한 사업 추진
- 용 역 비 : 999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제주시 지방하천(귀덕천 외 10개하천) 재해예방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999	900	△99	△9.9

III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감리원수) 조정
 - 착수지구 사업장 공정을 적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맞게
 감리원수 재 산정결과 반영
- 직접경비 주재비 조정
 - 상주감리원의 주재비는 감리대상 현장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
 지로서 감리원이 출퇴근이 어려워 현장에서 숙식을 하는 경우
 에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공동도급 30%)
 만큼 감한 주재비 조정 결과 반영
- 차량운행비 조정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맞게 승합차 → 승용차 적용 단가 재 산정결과 반영
- 공사비 1,000억 미만 : 승용차(배기량 2,000cc이하) 1대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o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주시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시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한
품질확보 및 건설시공과 아울러 체계적인 원활한 사업
추진
- 용 역 비 : 1,878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전면책임감리 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878	1,559	△319	△17.0

III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감리원수) 조정
 - 하수관거(차집관) 시설과 하수처리장 증설 시설이 포함된 복합
공종으로, 감리원 배치기준(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공
종 조정결과에 의한 감리원수 적용
⇒ 복잡한 공종을 적용 감리원수 산출사항을 복잡한 공종
(하수처리장)과 단순한 공종(하수관거)을 구분·적용
 - 토목, 전기 등 공사별 계약심사 결과에 의한 공사비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별표 1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 용 역 비 : 890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890	819	△71	△8.0

III 주요 심사내용

- 현장실험비(Pilot Plant) 단가 조정
 - 고도정수처리시설(여과시설) 결정을 위한 Pilot Plant(RO, NF막) 현장실험에 대하여
 - Pilot Plant는 여과시설 공법결정을 위한 소모성 시설로 현장 설치시 향후 유지관리 등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목적에 의한 데이터 확보 후 철거를 포함하는 임대료로 적용
(시설비 견적단가 → 임대료 견적단가 반영)
- 직접경비 항목인 성과품 인쇄비 조정
 - 본 보고서와 현장실험보고서에 대하여는 전자조판 마스터를 적용하고, 그 외 부록에 대하여 전자조판 마스터 → 복사로 인쇄 방법 조정

‘11 제주시 동지역 및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11 제주시 동지역 및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를 위한 품질확보 및 견실시공과 아울러 체계적인 원활한 사업 추진
- 용 역 비 : 1,740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전면책임감리 용역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740	1,517	△223	△12.8

III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감리원수) 조정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한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
를 말하며,
 -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
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감리대상 총공사비 적용금액을 상기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맞게 계약심사 결과에 의한 공사비를 적용 직접인건비 재 산정
결과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경기장 리노베이션공사 설계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경기장 기능보강을 위한 설계용역
- 사 업 비 : 463백만원
- 사업내용 : 종합경기장 리노베이션 설계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63	404	△59	△12.8

III 주요 심사내용

- 2011년 완료된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의하면 주경기장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계산 및 안전성검토가 이루어졌으며,
- 시설물의 상태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계획 및 추정공사비 등이 수립되어 있어 기존 용역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구조체 보강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비 제외

제주월드컵경기장 정밀안전진단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경기장의 안전진단
- 사 업 비 : 251백만원
- 사업내용 : 경기장의 정밀안전진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51	231	△20	△8.1

III 주요 심사내용

- 투입인원수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붕트러스의 면적산정을 연면적산정방법으로 수량조정
- 전차보고서 및 야장CAD파일을 동시에 제공할 경우 직접인건비의 기준인원수에 0.95를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정비율을 적용하여 투입인원수 조정
- 투입인원수의 조정에 따라 여비및체재비, 차량운행비, 현지보조인부 조정
 - 여비 : 용역당 10인 1회 왕복
 - 현지 차량운행비 : 외업인원수 4인 이내 1대(4인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 현지보조인부 : 외업인원수의 40%적용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생태문화탐방객에 대한 안전 및 편의제공
- 사 업 비 : 435백만원
- 사업내용 : 탐방로 훼손지에 대한 복구 및 시설확충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35	396	△39	△9.0

III 주요 심사내용

- 본 실시설계 대상사업은 제주도 관내 95개소에 분산된 소규모사업이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정하고 있어,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 제15조 의거 설계요율을 7% 감액 조정
- 추가업무 대가지급 품목인 도서 인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설계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이어야 하나 설계범위에 설계도서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출 자료의 수량 등에 대한 설계요율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추가 업무비용으로 계상된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인쇄비 삭제

국제여객터미널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여객터미널 신축공사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 사 업 비 : 435백만원
- 사업내용 : 국제여객터미널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679	2,612	△67	△2.5

III 주요 심사내용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에 의거 비상주감리원의 비율은 복잡한 공종인 경우 총 감리원수에 2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잡공종을 적용한 감리원배치기준의 비상주감리원을 총 감리원수의 10%에서 20%로 조정
- 통합 계상된 전기, 소방, 통신감리원의 배치인원 산정을 공종별로 각각 구분하여 배치인원 산정
- 조정된 비상주감리원의 비율을 적용하여 주재비는 상주감리원 인건비에 30%를 적용하고, 출장비는 비상주감리원의 인건비에 10%를 적용

5. 일반·학술용역 분야

제주시 5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대장 작성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시 5개(죽성지류1, 한천지류1, 가메통천, 흘천지류2, 골쇠천) 소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종합 정비계획 수립
- 용 역 비 : 773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1식
 - 소하천대장작성,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773	657	△116	△15.0

III 주요 심사내용

- 하천측량 단가 조정
 - ▶ 지형측량(기준점 측량) 기준 배점수 조정
 - 소하천 측량폭(100m→50m 적용)에 맞게 지형측량 면적 조정
 - 상기 측량면적 조정결과에 의한 건설표준품셈 기준배점수 적용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포장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률에 의거 적정 처리
- 용 역 비 : 301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11,270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01	284	△17	△5.7

III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제비율 추가 적용
 - 건설폐기물 운반비에 대하여 일반관리비(5%) 및 이윤(10%) 추가 반영
- 폐기물 운반비 단가 조정
 - 현장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재조사 현황 및 결과에 의한 운반거리 적용 단가 재 산출결과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물가정보지(기획재정부 허가)

화북천 외 16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변경) 및 하천 대장작성 전산화 용역

I 사업개요

- 목 적 : 화북천 등 17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이용·개발과 치수경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 용 역 비 : 1,892백만원(도급)
- 용역내용 :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용역 1식
 - 하천대장작성 전산화, 하천측량, 사전환경성검토 등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892	1,673	△219	△11.6

III 주요 심사내용

- 하천측량 금액 조정
 - 지역실정 및 현장여건 반영 2급기준점 적용 제외
⇒ 기존에 설치된 기준점 활용
 -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현장여건에 맞는 작업량비 적용
⇒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 산지 → 평지 적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 검토) 금액 조정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에 맞게 투입인력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2012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6. 물품구매·제조 분야

○○도시 진입도로 가로등주 제조 구입

I 사업개요

- 목 적 : 제주 ○○○○ 진입도로 중 ○○-○○도시 구간의 도로공사에 따른 가로등주 제조 구입
- 사업비 : 631,069천원
- 사업내용
 - 가로등(1등용) : 188개
 - 가로등(2등용) : 22개
- 사업기간 : 착수로부터 12개월

II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631,069	572,587	△58,482	△9.27

III 주요 심사내용

- 설계내역서의 재료비 단가와 주요자재 단가비교표의 단가가 서로 상이하여 이를 주정하여 적용함
- 경비 배부율 및 일반관리비를 산출을 위하여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2011년도)”를 활용하여 비율을 산정함
- M/D당 임율의 기본급을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2010년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1년도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단가(일급)을 적용하여 조정함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o 2011년도 전기표준품셈
- o 2011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o 2011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o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 o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 o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세 포 배 양 실 검 사 장 비 구 입

I 사업개요

- 목 적 : 가축전염병 검진 및 혈청검사연구 사업에 사용
- 사 업 비 : 26백만원
- 구매내용 : 위상차 현미경 등 2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6	22	△ 4	△15.7%

III 주요 심사내용

- 전문 유통업체 3개소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한 후 발주부서에서 조사된 견적가격 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 품목별 조정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심사 검토사항 >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발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최저가격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농기계 임대사업용 장비(농용트랙터) 구입

I 사업개요

- 목 적 : 농어민들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용 장비를 구입하여
대상농가 교육 및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사 업 비 : 113백만원
- 구매내용 : 농용트랙터 구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13	110	△ 3	△3.28%

III 주요 심사내용

- 전문 유통업체 2개소 추가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를 통하여 거래
실례가격 조사한 후 발주부서에서 조사된 견적가격 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 최저가격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심사 검토사항 〉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발
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최저가격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2012 상반기 시약 및 초자류 구입

I 사업개요

- 목 적 :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연구사업에 사용
- 사 업 비 : 314백만원
- 구매내용 : standard Gas Mixture 등656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314	309	△ 5	△1.56%

III 주요 심사내용

- 전문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하여 거래실레가격 조사한 후 발주부서에서 조사된 견적가격 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 품목별 조정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심사 검토사항 〉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레가격을 조사하여 발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최저가격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저온저장고 기자재 구입

I 사업개요

- 목 적 : 연구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정된 환경기반
실현을 위한 기자재 구입
- 구매내용 : 저온저장고 기자재 구입
- 사 업 비 : 124백만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124	119	△ 5	△3.66%

III 주요 심사내용

- 전문 유통업체 2개소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조사한 후 발주부서에서 조사
된 견적가격 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 평균단가로 조정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심사 검토사항 >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발주부
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평균단가로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

I 사업개요

- 목 적 :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행정지역 위기강화를 통한 축산물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
- 사 업 비 : 235백만원
- 구매내용 :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235	225	△ 10	△4.48%

III 주요 심사내용

- 전문 유통업체 2개소 추가 견적 및 조달청 가격정보를 통하여 거래
실례가격 조사한 후 발주부서에서 조사된 견적가격 대비 가격의
적정성을 감안, 최저가격 반영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심사 검토사항 〉

- 시중에 적정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발주부서에서 조사한 가격 대비 최저가격 적용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

7. 인쇄물 분야

2013년도 ○ ○ ○ 수첨발간 제작

I 사업개요

- 목 적 : 도정업무현황을 수록한 공무원 업무용 수첨을 발간 제작하여 업무용 참고자료 및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
- 사 업 비 : 40백만원
- 규 모 : 4×6배판 16절, 양면4도, 읍셋인쇄, 10,000부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0	39	△1	△1.61

III 주요 심사내용

- 용지단가 조정 : 표지 및 내지의 가격을 업체 공표가격인 물가정보지 적용된 것을 지류업체 거래실례가격 적용으로 용지가격 조정
- 전자조판 및 편집료 : 발주부서 기본파일 제공으로 조판면수 10% 감산 조정 및 할증요율 적용단가 조정
- 인쇄비 : 인쇄통수 【용지소요량(연*연당통수(2절 1,000통*부수단가)에 따른 인쇄료 단가 적용하여 조정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제주 농업 정보지 제작

I 사업개요

- 목 적 : 새로운 제주농업 책자 제작하여 농가 및 제주방문객들에게
제주농업 관광 홍보
- 사 업 비 : 43백만원
- 규 모 : 10절, 양면4도, 읍셋인쇄, 4,000부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II 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결과금액	조정금액	조정율(%)
42	40	△2	△4.94%

III 주요 심사내용

- 용 지 대 : 물가정보지 및 지류업체 견적단가 비교 물가정보지 단가 적용
- 인쇄판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거 국배판인 경우 69.4% 적용
- 인 쇄 비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거 인쇄통수 【용지소요량(연*연당통수(2절
1,000통*부수단가)에 따른 인쇄료 단가 적용하여 계상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경비조정에 따라 조정 반영 등

IV 적용 법규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

Ⅲ. 전국 계약심사 사례

1. 서울특별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00지구 2단지아파트건설공사(토목)
- 요청기관 : 00공사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6,918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4,158백만원
- 절감금액 : 2,760백만원 (절감율 : 39.9%)

□ 현황 및 문제점

- 단지내 여유부지가 많아 작업순서를 조정하면 불필요한 공중제거 가능함에도 아파트건설공사는 관행적으로 도로를 우선 조성후 아파트지하층을 굴착하는 관계로 아파트지하층 굴착시 도로붕괴방지를 위하여 흙막이가시설 필요

※ 작업순서 : 도로조성→흙막이가시설→지하굴착→구조물시공→되메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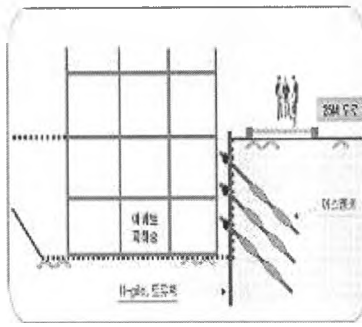
□ 개선사항 및 효과

- 발상의 전환을 통한 불필요한 공중제거로 예산절감 및 공기단축
 - 아파트지하층 굴착공사 원가는 도로조성 후 붕괴방지를 위한 가설흙막이를 설치하여 굴착하는 것으로 산출
 - 단지내 아파트지하층 굴착과 우·오수관 부설공사는 사업부지가 넓고, 장비의 이동로와 작업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 아파트건설현장의 여유 부지를 고려하여 아파트지하층을 우선 굴착 및 되메우기후 도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작업순서를 조정하면 불필요한 흙막이가시설을 제외하여 6개월의 공기단축과 22억원상당 예산절감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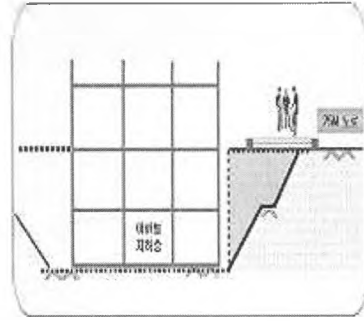
※ 작업순서 : 지하굴착→구조물시공→되메우기→도로조성

□ 예산절감(세입증대 효과)

- 작업순서 조정으로 불필요한 공중 제거 : 가설흙막이공법
 - 공법 변경 : 가설흙막이공법(H-Pile(1,926m)+ 어스앵카(459공))
→ 자연사면처리공법(가설흙막이공법 삭제)
 - 예산절감 : 2,200백만원 절감 및 공사기간 6개월 단축 도모
(6개월 단축으로 650백만원 상당 추가 절감효과 등 2,850백만원 상당 예산절감 도모)



<흙막이가시설공법(H-Pile+어스앙카)>



<자연비탈면공법(흙막이가시설공법 제외)>

□ 사업개요

- 사업명 : 000성능개선공사
- 요청기관 : 0000본부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3,903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2,920백만원
- 절감금액 : 983백만원(절감율 : 25.2%)

□ 현황 및 문제점

- 교좌장치 받침철판(Soil Plate) 상세 설계도면 미 작성
 - 받침철판은 정밀도를 요하는 부분으로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도를 작성하고, 상부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필요
 - 잡철물제작 방법으로는 받침철판을 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작을 하더라도 철판의 절단면이 정교하지 못하여 받침철판을 밀설시공 곤란
- 현장과 다른 원가 과다산출로 예산낭비
 - 받침철판중 평면상태의 받침은 일정 두께의 절단 공종만 필요하고 경사상태의 받침은 일정 두께의 철판을 공장에서 정밀하게 밀링가공 필요
 - 교좌장치 받침철판의 공사원가는 소규모, 경량 철판 등의 제작에 필요한 잡철물 제작품으로 산출하고 있어 공사원가 과다산출로 예산낭비

□ 개선사항 및 효과

- 잡철물 제작의 품셈 기준은 ton당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받침철판과 같이 특별한 작업공종이 없는 단순한 작업에 동 품셈기준을 적용할 경우 강재의 중량으로 인하여 공사원가는 과다하게 산출되는 모순 발생 (개선을 하게 된 주요 착안사항임)

- 현장에 적합한 『교좌장치 받침철판(Sole Plate) 원가산출 방법 개선』
으로 적정 공사원가 산출 기틀 마련
 - 교좌장치 받침철판의 중요도를 감안 철판을 용접이음으로 설계(공사원가 산출)하는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 조치
 - 철판을 잡철물제작 및 설치 방법에서 밀링가공 방법으로 개선하여 받침철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사원가를 절감하는 2가지 개선 효과 발생
 - ▷ 받침철판(경사상태) : 잡철물제작설치 3,607,179원/톤
⇒ 밀링가공제작 548,516원/톤(감 3,058,663원, 84.8%)
 - ▷ 받침철판(평면상태) : 잡철물제작설치 3,607,179원/톤
⇒ 밀링가공제작 177,068원/톤(감 3,430,111원, 95.1%)
- 현장에 적합한 『교좌장치 받침철판(Sole Plate) 원가산출 방법 개선』
으로 적정 공사원가 산출 기틀 마련
 - ▷ 00교 성능개선공사외 1건 계약심사 : 387백만원 예산절감
- 지속적인 예산절감 도모
 - 교좌장치의 중요성에 비해 제작(고가)과 시공(저가)을 달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적정 공사원가 산출 방법을 제시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는 물론 교량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
 - 본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계약원가심사에 적용하여 예산절감 도모
 - ▷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울시 산하기관에 횡단전개 완료

□ 사업개요

- 사업명 : 00공원 경사면 계단설치공사
- 요청기관 : 00푸른도시사업소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1,907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1,421백만원
- 절감금액 : 486백만원(절감율 : 25.5%)

□ 현황 및 문제점

- 월드컵공원(하늘공원)의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경사면(199m)에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 계단설치를 철골재 받침과 방부목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현행 표준품셈에 목재계단설치에 대한 품셈이 없어 발

주부서에서 유사공종을 이용하여 원가산출 하였으나 과다하게 원가를 산출하였음

□ 개선사항 및 효과

○ 계단하부 철골 구조물 설치품 조정

- 하늘공원 경사면(199m)에 철골재 및 방부목 등으로 계단을 신설하는 공사로서 계단하부에 설치하는 철골(H빔) 구조물 설치를 표준품셈의 철골교량 설치품을 적용하여 원가산출 하였으나
- 설계도서와 시공방법을 확인한바 계단하부 철골구조물 설치에 H빔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공종으로 철골교량 설치품보다 일반 가시설 공사의 H빔 설치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H빔 설치품으로 조정하여 심사함으로써 예산절감

※ 철골 구조물 설치 : 2,729천원/ton → 1,233천원/ton

○ 목재가공 설치품 조정

- 목재계단설치를 위한 목재가공 설치품을 목조주택 건립시 적용하는 노무품으로 원가를 산출하였으나
- 계단설치에 사용되는 목재는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되므로 많은 목재가공이 요구되는 목조주택 건립품을 적용하여 원가산출한 것은 과다하므로 표준품셈내 계단설치와 유사한 마루널갈기품을 적용하여 심사를 함으로써 예산 절감함

※ 목재가공설치 : 1,762천원/m³ → 698천원/m³

- 예산절감 : 355백만원(당초 732백만원 → 변경 377백만원)
- 향후 유사공종에 대한 사업예산 절감 효과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명 : 000고가교 및 00로 연결로 개선공사
- 요청기관 : 0000본부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22,335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21,170백만원
- 절감금액 : 4,165백만원(절감률 16.4%)

□ 현황 및 문제점

- 가설교량 제작 및 설치에 대한 표준품셈의 명백한 기준이 없어 관행적으로 유사품셈을 이용하여 원가 산출에 따라 공사비 과다설계

- 가설교량에 사용되는 자재(강재)의 손료가 사용기간 1년 이상일 경우 70%로 적용되어 강재 손료가 고재처리비용보다 높은 원가로 산출되거나 관행적으로 강재 손료를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함

□ 개선사항 및 효과

- 가설교량이 철골의 제작 및 설치로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표준품셈을 이용한 적정원가 산출로 예산절감
 - 가설교량 설치에 대한 명백한 품셈 기준이 없음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유사품셈을 이용하여 품을 산출하였으나 가설교량이 H빔 등 철골을 이용하여 제작·설치되는 점에 착안하여 건축품셈 제7장 철골공사의 품을 가설교량 제작 및 설치에 적용
 - ▷ 가설교량 가공 및 조립 개선내용
 - 철골공 : 8.15인/ton → 4.72인/ton
 - 비계공/보통인부 : 3.0인/0.25인 → 삭제
 - 용접공 : 0인/ton → 0.5인/ton
 - 가설교량의 사용강재는 회수 가능하고, 품셈의 강재 손율(70%~100%)이 높아 자재의 잔존가치(30%)보다 고철단가(강재의 약 50%)가 높은 점에 착안하여 손율 대신 가설교량의 사용자재를 고재처리 조건으로 설계
-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유사품셈의 허점을 개선하여 예산절감 성과 제고
 - 표준품셈이 없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유사품셈의 허점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품의 조정과, 가설교량에 사용되는 강재에 대한 비용 산출시 고철값 인상애 따른 강재손율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가설교량 설치 및 철거 공종에 대해서만 2,540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함
 - 예산절감 : 2,540백만원 절감
(도급비 25,335백만원 공사에 대하여 총 절감액 4,165백만원(16.7%) 중 가설교량 부분은 9,013백만원중 예산절감 2,540백만원을 절감하여 28.2% 예산절감)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하철 00역 혼잡도 개선공사
- 요청기관 : 00000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22,180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19,26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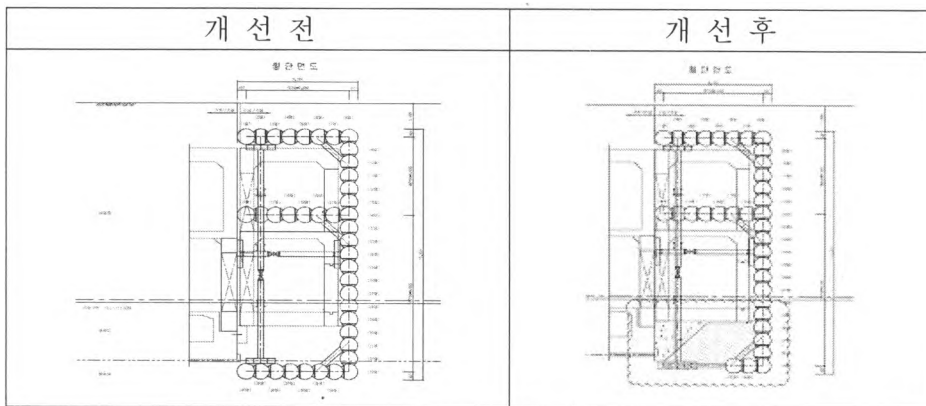
○ 절감금액 : 2,912백만원(절감율 : 13.1%)

□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철 00역 혼잡도 개선공사는 비개착에 의한 강관추진공법으로 외부토사압력을 지지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법을 적용
- 비개착공법에 의한 강관추진공법은 신기술 특성에 따라 고유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안전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운 특수성 있음

□ 개선사항 및 효과

- 강관추진공법의 하부는 풍화암 구간으로 구조검토 결과 강재가시설 보완으로도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어 강관추진공을 최소화 하고 강재가시설로 개선(강관 추진공 2,243m→1,892m, 감351m)
- 강관 추진공법을 강재 가시설공법으로 개선
 - 공법 변경 : 강관추진공법 축소 2,243m→1,892m(감351m)
⇒ 351m구간 강재 가시설공법 적용
 - 예산절감 : 1,020백만원 절감 및 공사기간 3개월(84.6일 소요, 풍화암 4.1m/일 굴토) 단축 효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풍납빛물펌프장 증설공사

○ 요청기관 : 송파구 치수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134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90백만원

○ 절감금액 : 44백만원(절감율 : 32.38%)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공사명 : 풍납뚝물펌프장 증설공사
- 공사개요
 - 주배수펌프 395m³/분 x 3대, 95m³/분x1대
 - 기계설비 : 전동기 4대, 크레인, 스크린, 지배수펌프

○ 문제점

- 입축사류펌프(D1,500 x 295m³/min x 10mH)의 토출측 관로에 도복장강관(D1,500), 플랜지를 구매하여 현장에서 단관을 제작 시공하도록 설계하여 관의 절단면의 불균일과 수작업 용접으로 품질저하의 문제가 있음

□ 개선사항 및 효과

○ 개선사항

-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되는 단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여 단관과 플랜지를 접합하는 공정에서 철관업체에서 설계도면의 치수대로 2F 단관을 제작하도록 개선

○ 효과

- 단관을 공사장 현장이 아닌 철관업체에서 단관을 제작하면 자동 용접으로 균일한 품질의 확보
- 단관 제작으로 해당공종 예산절감 현황
 - 재료비 : 36,799천원 → 25,933천원(감 10,866천원)
 - 노무비 : 15,366천원 → 전액삭감

1-1. 마포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간 하수관개량공사
- 요청기관 : 마포구 본청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709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585백만원
- 절감금액 : 123백만원 (절감율 : 17.44%)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지반보강을 위한 쉬트파일 항타(워터젯) 시행
- 관거 부설을 위한 굴착 : 관경에 따른 1:0.3 일괄 적용

○ 문제점

- 워터젯 시행에 따른 N값의 임의적 보정으로 워터젯 운영대수 증가 및 지층별 관입 품 과다설계
- 전압된 기존도로 굴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굴착 경사 적용에 따른 토공량(터파기, 되메우기, 사토처리) 과다설계
- 그 밖에 수량산출서와 설계내역서와의 단위 오류 및 재료비 과다 계상

□ 개선사항 및 효과

- 워터젯 시공 품은 SPT결과인 N값이 영향을 미치므로 N값의 보정이 중요함.
 - N값의 보정 : 해머 종류별 에너지 효율
유효상재하중, 룯드 길이, 샘플러종류, 시추공 직경 등의 상기위 항목에 조건에 따라 보정하며 N값은 지반을 분류하고 연경도 평가, 지반강도, 상대밀도등의 지반정수를 직접 추정하므로 자의적 판단에 따른 N값 확대 적용을 지양하고 사용 장비의 표준화를 이뤄 신뢰성을 확보함.
- 하수도 설계기준 준용 굴착 표준도 적용
기존 도로 :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이므로 하수관 개량을 위한 굴착 구배를 1:0.1로 적용함
 - 굴착단면 축소에 따른 민원 감소 및 사토량 감소

1-2. 성동구

□ 사업개요

- 사업명 : 응봉동 천성교회앞 도로(옹벽) 구조개선공사
- 요청기관 : 성동구 토목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223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194백만원
- 절감금액 : 29백만원(절감율 : 13%)

□ 현황 및 문제점

○ 불필요한 공종 제외

- 신축 옹벽(역T형 옹벽) 설치시 뒷채움 토사를 전량(554m³) 매입하여 되메우기 하도록 설계 되었으나,
- 되메우기시 전량을 실제 시공이 불가능한 별도의 소운반(운반거리 10 KM)을 공정에 포함시킨바 제외

○ 설계서 오류 보완

- 보도블럭 포장시 (면적 : 3a) 도로시방서 규정에 기층재의 높이를 10cm로 시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도블럭 포장시 기층재를 93cm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기층재의 수량 조정

□ 개선사항 및 효과

- 29백만원 예산 절감

2. 대전광역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금강살리기 11공구(갑천1지구) 정비공사
- 요청기관 : 대전광역시 생태하천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24,809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21,172백만원
- 절감금액 : 3,637백만원(절감율 : 12.2%)

□ 현황 및 문제점

○ 원가계산서 작성오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동부고시 기준 적용
· (재+ 직·노+ 관급)×1.88%→ ((재+ 직·노)×1.88%)×1.2 와 (재+ 직·노 + 관급자재대/1.1)×1.88%을 비교하여 적은 값 적용

○ 수량산출 오류

- 성토, 비탈면고르기를 법면전체에 대하여 계상 → 식생매트 부분만 시행토록 조정
- 조경석 놓기 실적을 조정(70%→66%)/'95 대전시 조경설계지침 적용

○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품조정

- 조경석 놓기품 → 하천구역임을 감안 전석쌓기품으로 조정

- 혼합석을 석산에서 구입 및 운반토록 품 산정 → 물가정보지의 도착 단가로 조정
- pp마대쌓기 및 헐기의 품 → 하천폭이 넓고 장비사용이 용이하여 ton마대쌓기 및 헐기품으로 조정
- 시공측량비를 좌·우안 제방연장으로 각각 산정 → 하천중심연장으로 조정
- 관찰데크 등 설치품 → 건축표준품셈중 마루 깔기품으로 조정

□ 개선사항 및 효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대상액을 관급자재대 포함시와 미포함시에 각각 산정후 적은값을 적용하였으며,
- 제방법면 면고르기는 구조물(매트)이 설치되는 부분에만 적용하여 수량을 절감하였고,
- 조정석 놓기품과 수량에서는 '95대전시 조정설계지침을 준용하여 관련 규정 준수

3. 울산광역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회야정수장 시설개량사업
- 요청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44,567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40,918백만원
- 절감금액 : 3,649백만원(절감율 : 8.2%)

□ 현황 및 문제점

- 철근 가공조립 구조변경
 - 정수장 신설 철근가공 조립 일괄 복잡가공 조립품으로 적용
→ 철근 직경 13mm이하 철근 총 중량이 50%이하인 경우 복잡가공 조립으로 적용
- 동바리 수량 산정
 - 암거 등 동바리 수량산출시 암거 공간 전체 수량으로 계상
→ 암거 현치부 등 동바리가 설치되지 않는 사공간 제외(전체 수량의 90%적용)

○ 가시설 설치수량 조정

- 배수관로 설치에 다른 가시설을 주변여건과 관계없이 지면 상부에서 구조물 하부까지 일괄적으로 적용
→ 관로의 매설 깊이와 절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구간만 적용

○ 자연석 쌓기 품 조정

- 자연석 쌓기 품을 정원석 쌓기 및 놓기 품으로 조정
→ 정원석 쌓기 및 놓기 품은 평지에 자연석 등을 기술적으로 배치하는 품으로써 잘못 적용되었으므로 전석쌓기 품으로 조정 적용

□ 개선사항 및 효과

- 건설표준품셈 적용시 각 품에 대한 적용기준 및 해석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었으나 품셈 적용기준에 맞게 적용
- 공사설계시 충분한 현장조사와 각 공종별 계획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공종은 삭제 또는 축소

4. 경기도

□ 사업개요

- 사업명 : ‘건설폐기물 심사단가’ 적용기준 마련 심사적용
- 방법 :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용역의뢰
- 처리비 원가계산 시 고려한 사항
 - 단가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도내 폐기물업체 중 대표성(점유율, 매출액 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
 - 단가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당해 연도 노임단가 적용 산정

□ 심사결과

- 심사대상 : 2010년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원가심사(68건)
- 심사요청금액 : 38,028백만원(전체 용역심사요청액의 28.8%)
- 심사조정금액 : 31,134백만원
- 절감금액 : 6,894백만원(절감율 : 18.1%)

□ 현황 및 문제점

- 주관부처인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비’가 고시된 바 없어, 발주기관별 자체적으로 처리단가를 산정하거나 협회가 제안한 단가를

참고하고 있어 기관별 단가 편차가 발생

- 시·도 심사부서에서 심사의 일관성을 위해 ‘견적가격’과 ‘표준품셈에 의한 심사단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관련 협회와업체로 부터 「심사적용단가」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 개선사항 및 효과

- 원가계산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산정(원가계산 전문기관 의뢰) 결과의 심사적용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 원가계산에 의한 ‘처리단가’가 ‘견적가격 및 협회단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절감을 제고로 지방재정운영 효율화에 기여

<2010 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관련협회 단가와 비교)>

(단위: 원/톤)

구 분	道 단가	관련협회 단가 (물가지계제)	차 액
폐콘크리트	10,646	16,239	5,593
폐 아 스 콘	11,583	17,755	6,172
건설폐재류	18,394	25,772	7,378
혼합폐기물 (가연성 10%)	37,197	53,348	16,151

4-1. 경기도 안산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월피동 체육문화공간 조성사업
- 요청기관 : 안산시 체육진흥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290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175백만원
- 절 감 금 액 : 115백만원(절감율 : 39.5%)

□ 현황 및 문제점

- 배수로 설치공사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주변 배수로 U형측구 설치공사에 대하여 현장타설로 설계되어 터파기, 기초콘크리트 타설, 거푸집설치, 콘크리트 타설, 스텔 그레이팅 설치 등의 복잡한 공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중단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공사기간 지체가 우려됨

○ 쥐똥나무 이식공사

쥐똥나무 이식공사는 표준품셈(관목류 굴취)에서 조경공 및 보통인부를 적용하여 굴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고 작업효율 또한 저하됨

○ 철거공사

자갈접촉산화시설는 대형 철근콘크리트 BOX 구조물로서 철거시 철근, 권양기, 맨홀뚜껑 등 고재가 많이 발생되나 설계에 고재처리비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콘크리트 깨기품 적용시 T=30cm 일괄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됨

□ 개선사항 및 효과

○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변경

배수로 설치공사 : 운동장 주변 우수처리 면적을 고려하여 U형 플룸관 및 스틸그레이팅을 관급자재로 구입설치토록 변경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공정 단순화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함

쥐똥나무 이식공사 : 현장여건 조사결과 굴삭기(0.2 또는 0.4) 작업이 가능하여 굴삭기 품을 적용하였으며, 쥐똥나무 1주씩 이식 설계에 대하여는, 실제 굴삭기의 1회 작업평균이 10주 정도를 굴취할 수 있으므로 10주를 원단위로 근원경(R10) 1주를 품을 적용함은 물론, 뿌리를 새끼 둘러매는 품이 없어 20% 감 적용하여 원가절감과 작업효율 증대를 기함.

○ 설계서 누락

철거공사 :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철근, 권양기, 맨홀 등 고재를 설계에 반영함은 물론 콘크리트 깨기 품을 30cm 이상과 30cm 이하로 구분 적용하여 공사비 절감

4-2. 경기도 평택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신장동 부대철도 주변 정비공사
- 요청기관 : 평택시(송출 건설도시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467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405백만원
- 절감금액 : 62백만원(절감율 : 13.3%)

□ 현황 및 문제점

- 레일절단품 및 침목천공품 산정시 중기비 단가적용 오류 : 대부분의 설계용역업체 설계프로그램이 중기비 산정시 중기기계단가가 천원단위로 입력되어 있음으로 레일절단기 및 침목천공기 중기 단가(건설품셈에 원단위로 명시)를 설계 적용시 천원단위로 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원단위를 그대로 적용 중기비를 산출하여 중기 단가가 1,000배로 높게 계상되어 약 30백만원의 공사비가 과다 산정되어 조정
- 당초 설계시 데크자재를 친환경합성목재로 계획하였으나 친환경합성목재 단가가 고가로 천연목재(이폐)와 휨강도, 비중, 내구년한 등을 비교 검토하여 천연목재(이폐)로 변경하여 29백만원 예산절감

□ 개선사항 및 효과

- 계약심사시 발주부서에서 계획한 자재에 대하여도 유사 우수제품과 시공성,자재의 우수성등을 재비교 검토하여 예산 절감방안 모색

4-3. 경기도 광주시

□ 사업개요

- 사업명 : 쌍동~용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 요청기관 : 본청(도로사업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1,343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957백만원
- 절감금액 : 386백만원(절감률 : 28.7%)

□ 주요 심사내용(현황 및 문제점)

- 제비율 및 분리발주 대상 등 삭감 조정
 - 산재보험료 제비율에 대하여 법정 효율(3.4%→3.6%)로 조정함
 - 건설폐기물처리(100톤이상)는 분리발주대상으로 원가계산서상 감액 조정함
 - 우수관 내부검사 CCTV검사는 신설구간으로 시공 및 품질에 철저히 기하여할 것으로 CCTV검사 물량 감액 조정함

-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세부내역 조정
 - 무근콘크리트깨기 외 16종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확대하여 적용
- 일위대가표 산출 조정
 - 덤프트럭 평균주행속도(25km/hr → 35km/hr) 조정 적용함

□ 개선사항 및 효과

- 원가계산시 각종 제비율 계상방법을 숙지하여 반영
- 분리발주 대상사업 및 불필요한 공정에 대한 검토 필요

5. 강원도

□ 사업개요

- 사업명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전기 및 계측제어)
- 요청기관 : ○○시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2,533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2,233백만원
- 절감금액 : 300백만원 (절감율 : 11.8%)

□ 현황 및 문제점

- 인건비 및 제경비율 등 설계시점 적용
 - 예산문제로 공사발주 지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환경보전비 적용
- 표준품셈 적용 오류
- 한전수탁비 과다 적용
- 부자재 물량 도면과 불일치 과다 산정
- 자재단가 과다 산정
- 기존 설비와 연계하여 호환성이 불분명한 고가 장비 도입
- 가격과 유지보수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 적용

□ 개선사항 및 효과

- 인건비 및 제경비율 등 발주시점 기준 최근 단가·제경비율 등 반영
 - ⇒ 절감률에 치우치지 않는 적정 설계 적극 반영
-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환경보전비 삭감
 - ⇒ 불필요 경비 절감
- 표준품셈 적용 오류 개선 ⇒ 면밀한 설계 검토

- 계약전력을 확인으로 증설되는 용량만 한전수탁비로 반영
⇒ 시설용량에 불부합한 과다경비 절감
- 배관(배선) 등의 곡선 도면화에 맞춘 수량을 실제시공기준 직선 수량 산출
⇒ 수량 과다설계 방지
- 영상감시반 DLP CUBE를 산업용 LCD로 변경
⇒ 예산절감, DISPLAY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경제성 등 확보

6. 충청남도

□ 사업개요

- 사업명 : 갈산도로 선형개량공사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955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816백만원
- 절 감 금 액 : 139백만원 (절감율 : 14.5%)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목 설계 반영
 - 평면 선형 불량 구간 절토 작업 중 토사의 도로 유입 방지를 위한 안전목 설치가 내역에 반영됨
 - 실제 현지 확인한 바 기존 도로의 산지측(절토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음
- 공사중 기존 옹벽 존치시 안전목 역할 대체 가능
 - 절토부의 기존 옹벽을 공사중 존치시 안전목 역할(토사 도로 유입 방지) 가능
 - 이에 절토 작업 전 철거하려던 옹벽을 절토 작업 후 해체로 공사 계획(작업 순서)을 조정하여

⇒ 공사에 불필요한 안전목 L= 100m, 12백만원 설치비 삭감

□ 개선사항 및 효과

- 계약심사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면 설계도서 검토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현지 여건에 적합한 공법과 불필요 공종 발견 가능

7. 전라북도

□ 사업개요

- 사업명 : 익산 황등 중로 2차 도로개설 공사
- 요청기관 : 익산시 도시개발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2,340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1,565백만원
- 절감금액 : 775백만원(절감율 : 33.1%)

□ 현황 및 문제점

- 구조물(건물벽, 바닥포장) 철거 물량 과다 산정
- 지정폐기물 물량 과다 산정
- 교통안전시설 중 측구표지판 수량 오기 기입
- 보도블럭 설치시 기초 모래포설 중복

□ 개선사항 및 효과

- 현장 조사후 수량 재산정
 - 건물벽 두께(20cm → 15cm), 바닥포장(30cm → 20cm) 변경
 - 스투트 2겹 산출하였으나 현장조사결과 일부 건물만 2겹 상태로 확인
 - 측구표지판 수량 21EA에서 1EA로 수량 변경

7-1. 부안군

□ 사업개요

- 사업명 : 난산지구 받기반정비사업
- 요청기관 : 부안군 건설도시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398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337백만원
- 절감금액 : 61백만원(절감율 : 15.3%)

□ 현황 및 문제점

- 불필요한 저수조 물탱크 하부 구조물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
- 사토운반거리를 5km로 과다 산정
- 수도계량기보호통 사급자재로 활용함으로써 예산 낭비

□ 개선사항 및 효과

-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내역)으로 변경

- 수압조절을 위해 구조물을 설계하였으나 물탱크 설치 위치의 토목고 차이가 높아 현장 여건상 불필요하여 제외
- 물탱크 현장내에서 운반할 수 있는 여건으로 사토운반거리조정(0.5km)
- 과다 설계된 품목단가 관급자재로 변경하여 12백만원 절감

7-2. 완도군

□ 사업개요

- 사업명 : 완도 노화 미라 해변친수공원 조성공사
- 심사기관 : 완도군

□ 심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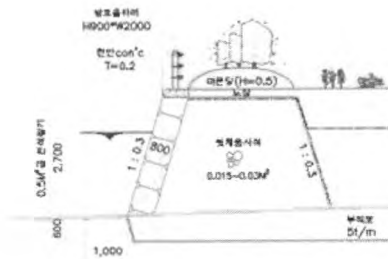
- 요청금액 : 450백만원
- 조정금액 : 436백만원(절감액 14, 3.1%)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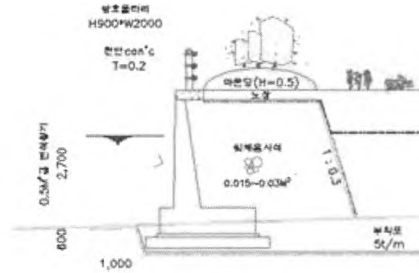
- 해변 공원 조성공사로서 해안도로에 호안사석으로 부지 조성 후 공원 조성하는 공사임.
- 완도군 관내 석산이 채취허가 만료로 인하여 호안사석을 고흥 금산석산에서 구입함에 따라 과다한 해상운반비 소요로 인한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 개선사항 및 효과

- 석축공→옹벽공으로 변경
 - 공원부지조성 호안시설을 석축쌓기로 계획되었으나 석산이 고흥에 소재하고 있어 해상운반비 과다 소요
 - 호안시설을 돌쌓기에서 옹벽구조물로 변경하여 해상운반비 절감
- 미 반영된 제 비율 추가 반영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 적용 기준 고시(국토부고시 제 2009-735호)에 의거 미 반영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반영(0.05%)
 -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 2.3%(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
- 수목단가 조정
 - 물가정보로 반영된 수목단가 조달청가격정보 단가로 변경



「 호안공 : 돌쌓기 」



「 호안공 : 옹벽 」

8-1. 경상북도 청송군

□ 사업개요

- 사업명 :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개최 홍보간판 설치공사
- 요청기관 : 새마을경제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100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87.5백만원
- 절감금액 : 12.5백만원(절감율 : 12.50%)

□ 현황 및 문제점

- 과다계상된 산출물량조정
 - 당초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홍보간판 설치를 2개소로 계상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1개소가 감소하였음
 - 수량산출시 계상한 당초 2개소의 기초 및 콘크리트물량을 적용하여 내역 작성.
- 불필요한 공정 삭제
 - 아연도강판은 아연을 도금한 것으로 부식이 잘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녹막이 방지를 위한 페인트는 불필요하나 이를 적용하여 계상한 사례임.

□ 개선사항 및 효과

-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를 비교 검토하여 과다계상된 산출물량을 조정하고 아연도강판에 필요하지 않은 녹막이페인트칠을 제외하여 조정하였으며,
- 자재단가에서 물가정보지 등 시중물가지와 조달청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므로써 원가절감을 한 사례임.

9-1. 경상남도 김해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해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
- 요청기관 : 환경보호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171,900천원, 심사조정금액 : 159,236천원
- 절감금액 : 12,664천원(절감율 : 7.37%)

□ 문제점

- 설계도서 작성시 해당분야(정보통신)의 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전기품셈을 적용한 과다 설계

9-2. 경상남도 거제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구항 호안 정비공사
- 요청부서 : 거제시 해양항만과

□ 심사결과

- 원가심사 요청금액 : 350백만원, 심사조정금액 : 320백만원
- 절감금액 : 30백만원(절감율 : 8.5%)

□ 현황 및 문제점

□ 자재단가 조정(조달청 조달단가 및 실례가격 적용)

- 오탁방지막(2톤) : 800,000원 ⇒ 600,000
- 앵커(닷, 100kg) : 500,000원 ⇒ 380,000원
- 차막이(L1000*W200*H180) : 49,500원 ⇒ 39,600원

□ 원가계산상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내역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으므로 내역서 부대공중 오탁방지막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어 원가계산서상의 환경보전비 제외.

□ 제체 사석 및 필터사석, 토사, 보조기층의 단위중량을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에 맞게 조정

- 사석단위중량 : $2.5\text{t/m}^3 \Rightarrow 2.4\text{t/m}^3$

- 필터사석단위중량 : $2.5\text{t/m}^3 \Rightarrow 2.1\text{t/m}^3$
- 토사단위중량 : $1.8\text{t/m}^3 \Rightarrow 1.6\text{t/m}^3$
- 보조기층단위중량 : $2.5\text{t/m}^3 \Rightarrow 1.7\text{t/m}^3$
- 구조물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단가산출 조정
 - 기계(90%)+인력(10%) $\Rightarrow$ 기계(100%)+보조인부 1인
- 오락방지막 앵커(닻) 고제처리 설계반영 : 3.375톤
- 설계 미반영(누락)된 자재 추가 반영
 - 이형철근(D13mm) : 1.257톤
 - 시멘트(40kg/포) : 5포
 - 흙관(D800mm) : 43.4m
- 개선사항 및 효과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조달단가, 물가정보, 실거래가격 등에 원가산출 내용 및 자재단가 정확히 파악 반영

IV. 부 록

순 서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2.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3.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
 3.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

1.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

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 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 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 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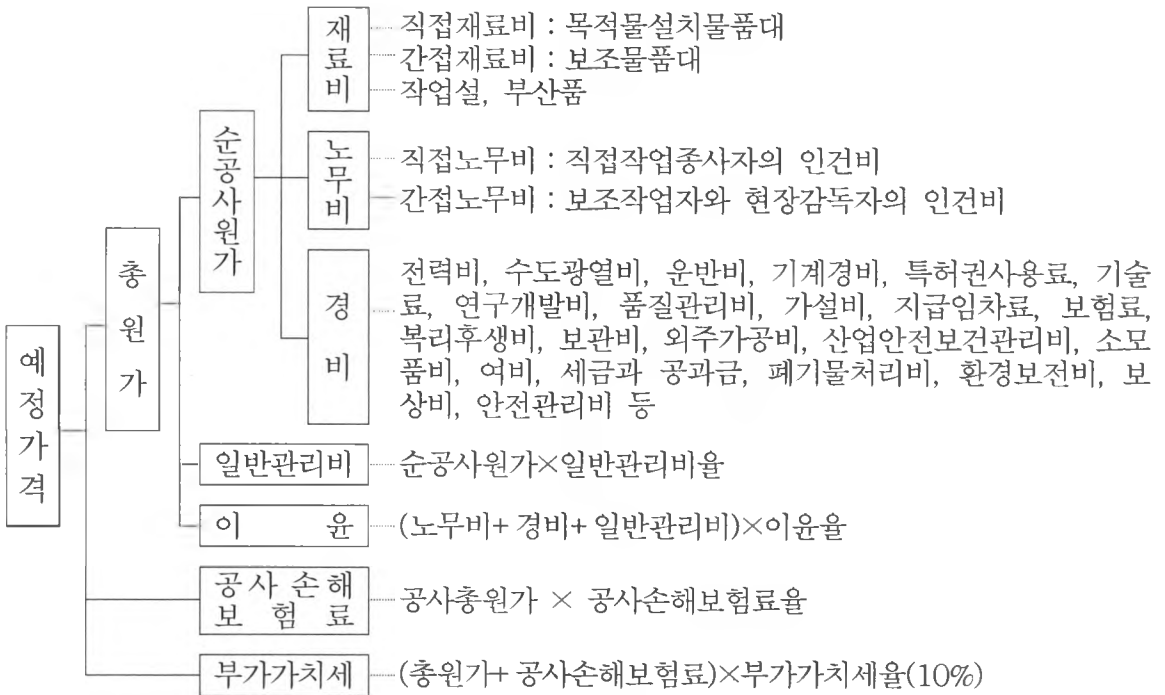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 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 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

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

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

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 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 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의 달성을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text{직접공사비} = \text{수량} \times \text{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

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

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

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2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15,894원
연구원	월 2,235,867원
연구보조원	월 1,494,604원
보조원	월 1,120,991원

-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주2) 위 단가는 2012년도 기준단가이며, 2013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정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〇〇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〇〇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〇〇사·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2.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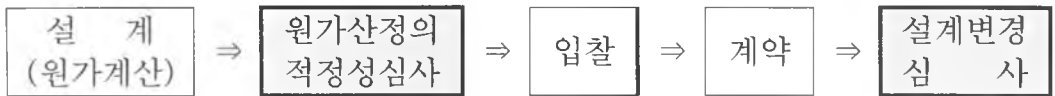
-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 제4절 원가심사
- 제5절 설계변경 심사
- 제6절 보칙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

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 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
↓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	
③ 심 사	▣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	
⑨ 심사결과통보 및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 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

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 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사·도는 20억원(시·군·구는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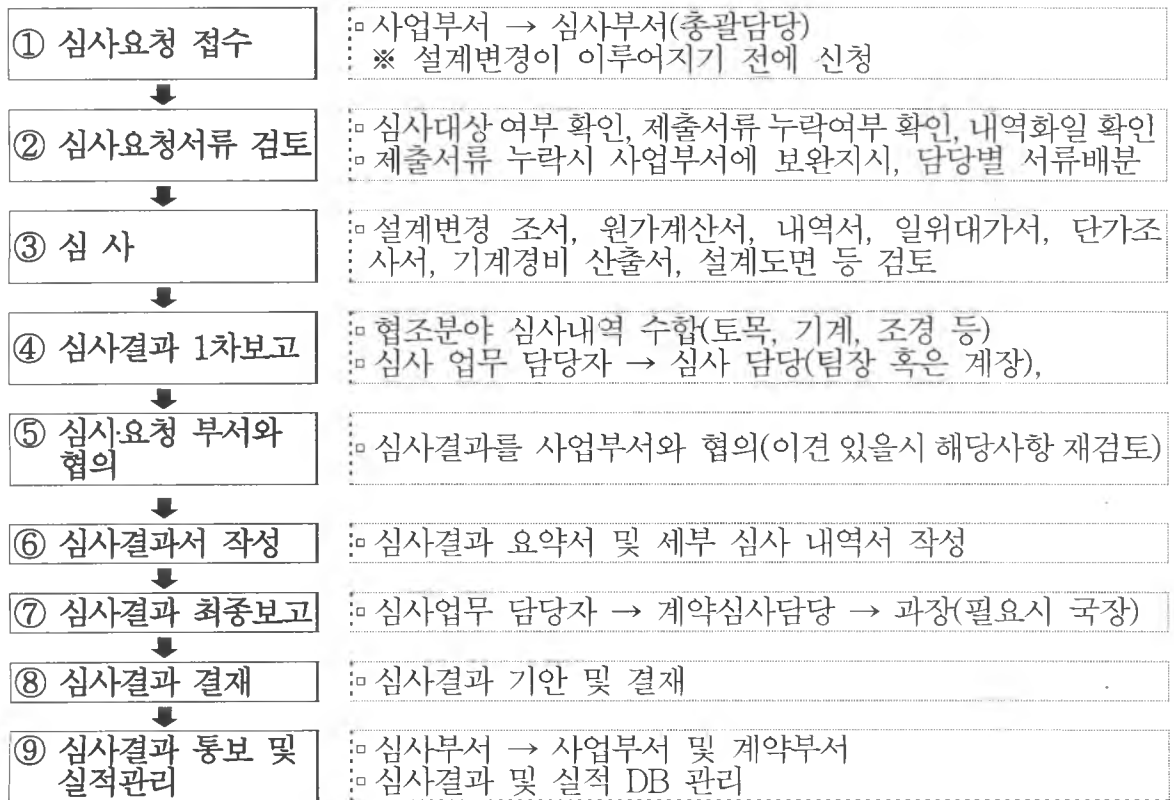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횃수에 제한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 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계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번호 :)	
발주처	·담당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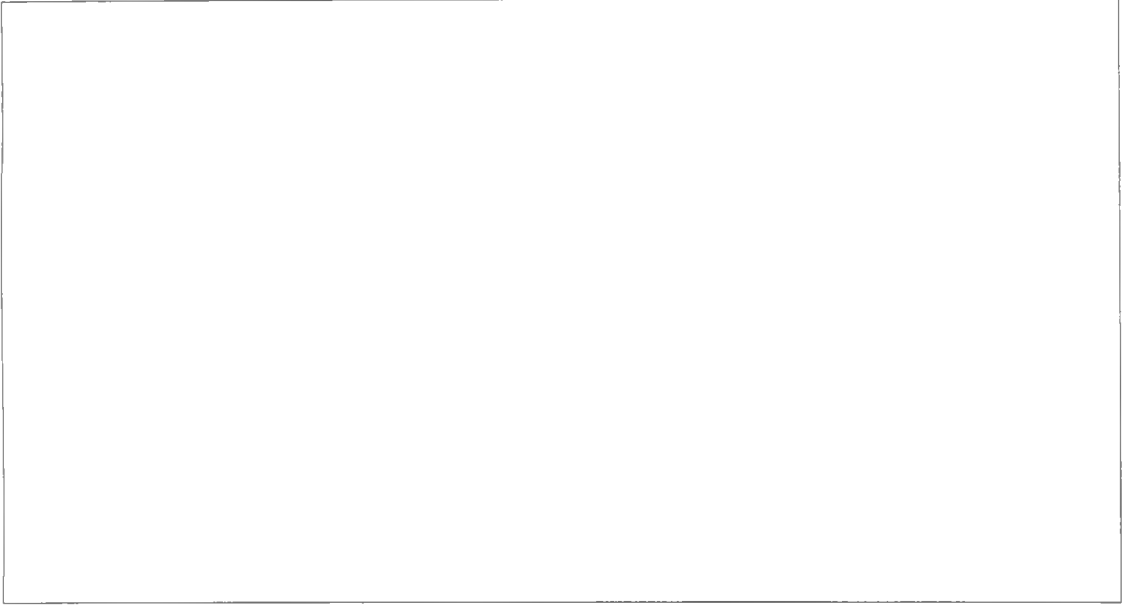
- 자재단가 조정 : 외 중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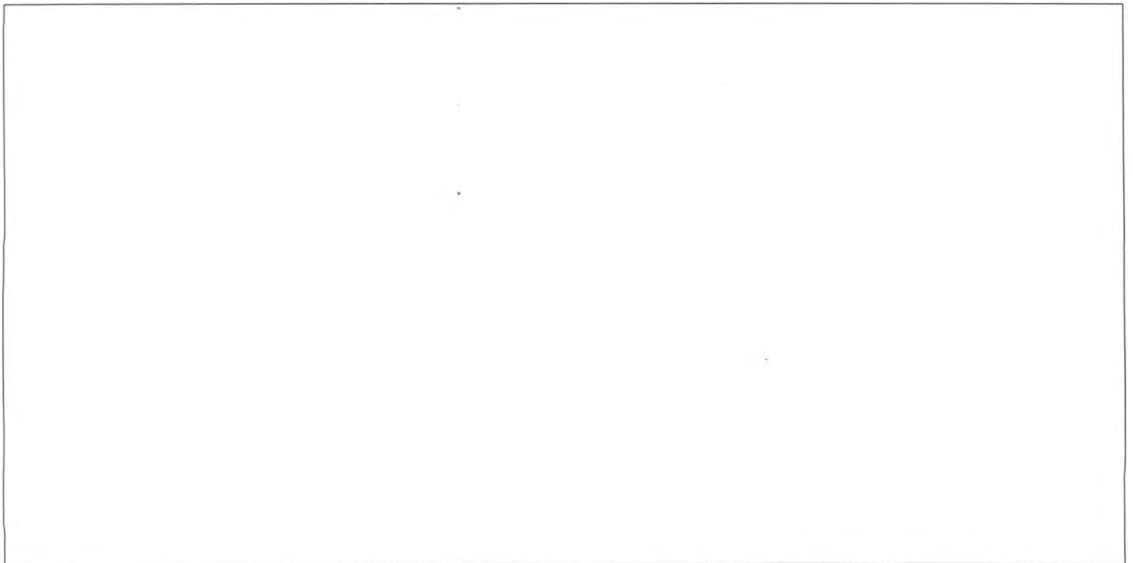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조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 원	· 금회용역비 : 천 원	
예정원가	· 담당부서 :		
작성 자	·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	--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역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제 경 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 경비				
		소계				
	계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 심사내용

- ☐ 용역명 :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중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대표자 :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illegible]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 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 사요청서에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 쇄물 심사요청 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중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	--

3.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0. 6. 3 제주특별자치도예규 제 35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본청의 과·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도의회사무처

라. 행정시

마. 도 지방공기업

바. 도 출연기관(단, 50퍼센트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지침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용역

4.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예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는 3억원 미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3. 조달청에 직접 계약 요청하여 발주하는 사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5.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구매계약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1명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경우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품목물품이나 자체 단가계약 물품

7.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써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항(기본계획 및 공법 변경)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부터 제7호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적어 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올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담당자				
시행일자					결 재	
수 신 자		합 조				
접 수						
접수일자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2. 비목별 기초계산서 3.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4. 인쇄물산출 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기타 참고자료(과업지시서, 계획서, 견적서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뒷면)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적용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〇 〇 〇 과장 성명 (인)

(뒷면)

- 수 량 :
- 제조기간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0 0 0 과장 성명 (인)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격 : 절(mm × mm) 2. 수량 : 3. 면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뒷면)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뒷면)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 료'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 름출력비'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 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별지 제7호]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첨부 서류 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지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4.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발신명의

4.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1. **건설계약연구원** (<http://www.csr.co.kr/>)
 - 기계경비 산출, 질의응답 유권해석, 제비율 적용 기준 등
2. **한국건설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 분야·공종별 신기술 현황 파악
3. **서울시 계약심사 동아리** (<http://cafe.daum.net/geyaksimsa>)
 - 서울시 계약심사 사례 각종 원가심사관련 자료
4. **서울외국환중개(주)** (<http://www.smbs.biz/index.jsp>)
 - 주요 통화기준을 확인
5. **한국건설자원협회** (<http://www.koras.org>)
 - 품목별 건설폐기물처리 비용, 운반수집 비용 단가 확인
6. **[사]한국원가관리협회** (<http://www.kcaa.or.kr/>)
 - 전국 원가분석기관 현황 및 원가분석 실무자료 확인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www.sw.or.kr/>)
 - SW기업정보 및 통계서비스, SW노임단가, SW사업대가의 기준 등 실무자료
8. **한국전기공사협회** (<http://www.keca.or.kr>)
 - 전기공사 관련 자료 및 신기술 자료, 전기·통신·신호 원가계산 자료 등
9. **한국조경수협회** (<http://www.klta.or.kr/>)
 - 조경수목 가격 확인(조달청, 시중거래가격)
10. **한국지반공학회** (<http://www.kgshome.org>)
 - 지반공학에 관한 자료 및 신기술 자료, 학술지 및 논문집 등

11. 한국건설감리협회 (<http://www.gamri.or.kr>)

- 감리노임단가 등

12.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 공사 적산기준, 견적기준, 기술자재 등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http://www.kict.re.kr>)

- 실적공사비, 건설기술 관련 연구자료, 기술자료 등

14.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가격정보, 자재단가, 관련법령 확인

15.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go.kr>)

- 측량노임단가, 수치지도 관련 자료 등

16.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건설사업대가기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설계감리대가기준, 측량용역대가기준,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등

17.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등

18.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감리노임단가 등